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Measures for Improving Access to the Computerized Data from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허한결 Heo, Hankyul  
안의순 Ahn, Euisoon

( a u r i

정책연구보고서 2022-6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Measures for Improving Access to the Computerized Data from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지은이 허한결, 안의순  
펴낸곳 건축공간연구원  
출판등록 제2015-41호 (등록일 '08. 02. 18.)  
인쇄 2022년 11월 01일, 발행: 2022년 11월 31일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43, KT&G 세종타워B 8층  
전화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https://www.auri.re.kr>

가격: 12,000원, ISBN: 979-11-5659-374-4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건축공간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연구진

---

- ▮ 연구책임 허한결 부연구위원
- ▮ 연구진 안의순 부연구위원
  
- ▮ 연구보조원 류현철 조사원

- 
- ▮ 연구심의위원 유광흠 선임연구위원  
조영진 연구위원  
이여경 연구위원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  
김태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 ▮ 연구자문위원 강준경 금오공과대학교 교수  
김영우 서울대학교 책임연구원  
김수영 경북대학교 교수  
김승범 브이더블유랩 소장  
박근송 창원대학교 교수  
손동화 충북대학교 교수  
이정원 충남대학교 교수  
최현철 가천대학교 교수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되어 건축물 정보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물 정보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 구현을 위해 국민의 주요 생활공간인 건축물 자료 활용이 필수적이며,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확산과 함께 건축데이터 개방 및 활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전산화된 건축행정정보인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성 제고가 건축·도시·공간 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건축행정시스템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과 관련한 기준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행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매뉴얼'은 2013년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정 공고 이후 미개정되어 원활한 데이터 제공이 어려우며,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등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방안을 모색하고, 건축행정시스템 자료제공 절차 등 매뉴얼 정비 방안을 제안하며,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건축물 관련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검토하였다. 현재 건축물 관련 데이터는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활발하게 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공공의 경우 다양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 중이나, 세부적인 이용자료, 활용방법 및 목적 불분명하였고, 민간은 다양한 건축물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비율은 낮게 나타났다. 이에 이용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목

록과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 방법·목적·결과 등 정보 축적 방안 마련 필요하며, 민간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과 관련된 법·제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건축법 및 관계법령,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에 대해 조사하였고, 현행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이 현행화 및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을 도출하였다.

이같은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이용 대상 전산자료의 민감도 구분 기준을 조사하고, 이용 대상 전산자료 민감도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목록을 유형화하고 최종적으로 민감도 등급에 따른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를 도출하였다.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과 관련해서는 전산자료 이용 환경 변화 반영, 전자정부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 변화 반영, 공공데이터법 제정 내용 반영,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반영 등 관련 타법에 따른 매뉴얼 현행화를 정리하였다. 또한, 이용 신청 절차 관련 용어 정리 및 기타 개선 필요사항을 정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은 현행 법·제도가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정리하고 개선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 절차 정비를 위해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개인정보 포함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제3자 저작권 포함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전산자료 제공 절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보완을 위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전산자료 이용절차를 보완방안, 전산자료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 의무화를 위한 규정 마련 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민간의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건축도면 공개를 위해 현행 건축도면 공개 시 저작권 문제 및 ‘건축물 도형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 주제어

건축행정 전산자료, 세움터, 건축도면, 데이터 개방

---

# 차례 CONTENTS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8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9
4. 연구의 흐름	11

##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13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18
3. 시사점	26

##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9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4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분석	42

## 제4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개선방안 제안

1.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53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60
3.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77

제5장 결론

1. 연구요약	87
2. 향후연구	89

참고문헌	95
------	----

SUMMARY	95
---------	----

부록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103
---------------------	-----

---

## 표차례 LIST OF TABLES

[표 1-1] 관련 법·제도 연혁	6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10
[표 2-1] 연계 시스템 및 활용 목적	15
[표 2-2]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37
[표 2-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근거 법령과 주요내용	43
[표 2-4]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대상과 주요 내용	44
[표 3-1]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제공 데이터	55
[표 3-2] 이용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분류	57
[표 3-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 개정(안)	60
[표 3-4]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방식 다양화 대응(안)	65
[표 3-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우선 이용(안)	66
[표 3-6]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 심의 개선(안)	78
[표 3-7]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심사 면제	82
[표 3-8]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계 중 양행정기관 명시	82
[표 3-9] 전산자료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 의무화	83
[표 4-1] 데이터안심구역 및 제공데이터 현황	90
[표 4-2]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92

# 그림차례

LIST OF FIGURES

[그림 1-1] S-MAP이 제공하는 3차원 건물정보	2
[그림 1-2] 국내 프롭테크포럼 관련 기업 현황 및 프롭테크 투자 현황	3
[그림 1-3] 2019-2021년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소유조회 건수	5
[그림 1-4]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및 이용 절차도	5
[그림 1-5] 연구의 흐름	11
[그림 2-1] 빅밸류 AI LOBIG의 공간정보 기반 매출추정 흐름도	18
[그림 2-2] AI기반의 신축 건축계획 예시	19
[그림 2-3] 직방의 3D 단지맵 제공화면	20
[그림 2-4] 공실 플랫폼 이용 실제화면	21
[그림 2-5] 홈체크 서비스 통계	22
[그림 2-6] 스파크플러스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23
[그림 2-7] 알파박스의 공유창고 사례	23
[그림 2-8] 하우스팀의 표준전적 도출 시스템	24
[그림 2-9] 이용절차도: (좌) 공사, 공단, 협회, 은행 등의 민간기관의 경우, (우)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46
[그림 2-10]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서 (왼쪽: 매뉴얼, 오른쪽: 건축법 시행규칙)	48
[그림 2-11]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승인 검토 결과서	48
[그림 2-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 (왼쪽), 보안각서 (오른쪽)	49
[그림 2-1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제공 관리대장	51
[그림 3-1] 민감도 등급을 반영한 전산자료 유형별 제공 판단	59
[그림 3-2] 전산자료 이용 유형별 이용절차 판단 순서도	62
[그림 3-3] 전산자료 이용 관련 서식에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항목 추가 (노란색 바탕)	64
[그림 3-4] 공공데이터 이용절차도	69
[그림 3-5] 전산자료 이용절차도(일부 발췌)에 표현된 심사 및 검토 관련 용어	72
[그림 4-1] 안심구역 내 분석공간	90
[그림 4-2]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의 맞춤형연구DB 세부신청절차	92
[그림 4-1] 이미지로부터 경계선 추출 연구 예시	93
[그림 4-2] 건축도면 예시	94

---

#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4. 연구의 흐름
-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건축물 정보의 활용 수요 증가

####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건축물 정보 활용 수요 증가

- 건축물은 주거, 경제활동, 안전과 같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공간으로, 디자인 예술적 측면만이 아닌 정량적 정보에 기반한 대응 필요
- 건축물의 구조, 면적, 용도, 비용 등 건축물의 현황이 기록된 건축물 정보는 프롭테크, 디지털트윈, 메타버스와 같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향상에 기여

#### □ 국정과제인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핵심정보

-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추진<sup>1)</sup>
  - 건축물은 국민의 주요 생활공간으로, 국민체감형 변화를 선도하기 위해 건축물 관련 자료의 활용이 필수적
-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 산업 확산 추진

---

1) 정부업무평가, [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https://www.evaluation.go.kr/web/page.do?menu_id=162), 2022.09.28. 접속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중요성 부각

-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성 제고가 건축·도시·공간 분야 주요 과제로 제시
  - 건축행정정보를 토대로 한 건축·도시공간 정보는 국민의 안전 및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높아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에 필수적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과 기술 적용 가속화를 위하여, 건축도면정보 등 건축정보의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 분야 산업 및 연구를 지원하는 실천과제를 제시
- 코로나19 사태의 ‘컨택트 트레이싱’, ‘재난지원금 지급’ 등에서 행정정보와 민간정보를 융·복합하여 성과 달성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이 결합되어 건축물 정보 활용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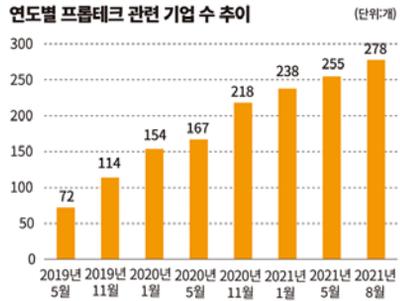
- 컴퓨터에 현실과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고 이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트윈 기술에 건축물 정보가 필수적
  - 현행 3차원 도시공간 구축 사업은 건축물의 외부 형상정보를 데이터화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일부 지역, 일부 건축물에 그치고 있음
  - 디지털 트윈 구축은 현실과 똑같은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어야하나 건축물 관련 정보의 미비로 실현이 어려운 상황
  - 기 구축된 3차원 건축물 정보는 외부형상정보의 경우 정밀도가 떨어지고 실내 공간정보 구축 불가능



[그림 1-1] S-MAP이 제공하는 3차원 건물정보

출처 : S-MAP, <https://smap.seoul.go.kr/> 2022.08.24. 접속. 서비스 이용하여 연구진 생성

- 부동산(Property)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된 프롭테크(Proptech) 활성화에 기계학습 기술 및 건축물 정보 수요 급증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발맞추어 프롭테크 기술이 발전하고 있으며, 2020년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확대 등은 프롭테크 시장의 폭발적 확대를 위한 근거를 제공<sup>2)</sup>
  - 대표적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인 기계학습을 위해 컴퓨터를 학습시키기 위한 데이터, VR/AR 기술 적용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 수요자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데이터 등 건축물 관련 정보 구축이 필수적



[그림 1-2] 국내 프롭테크포럼 관련 기업 현황 및 프롭테크 투자 현황

출처 : (좌) 한국프롭테크포럼, <http://proptech.or.kr/map>, 2022.08.24. 접속

(우) 한국프롭테크포럼. 이코노믹 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556824>, 2022.08.24. 접속. 에서 재인용

## 2) 건축행정정보의 활용성 제고 필요

### □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개념

-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기초가 되는 건축행정정보
  - 공공데이터 포털은 건축행정정보를 “건축물의 기획부터 소멸에 이르는 건축물 생애 관련 행정업무 전반에서 발생하는 정보”로 정의<sup>3)</sup>
- 전산처리된 건축행정정보인 건축행정 전산자료

2)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분석학회. 2022. 부동산산업을 바꾸는 기술, PROPTECH 현장에서 만나보는 협업 사례

3)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tcs/eds/selectCoreDataView.do?coreDataInsttCode=1613000&coreDataSn=1&searchCondition1=coreDataNm&searchKeyword1=%EA%B1%B4%EC%B6%95&searchOrder=INSTT\\_NM\\_ASC](https://www.data.go.kr/tcs/eds/selectCoreDataView.do?coreDataInsttCode=1613000&coreDataSn=1&searchCondition1=coreDataNm&searchKeyword1=%EA%B1%B4%EC%B6%95&searchOrder=INSTT_NM_ASC), 2022.09.04. 접속

- 건축행정 전산자료는 「건축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

□ 건축행정정보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통해 전산화되어 생산·관리

- 「건축법」 제31조 및 제32조,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에 근거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건축행정 관련 업무를 전산처리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허가권자는 제10조,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제25조, 제29조, 제30조, 제38조, 제83조 및 제92조에 따른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9조(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건축물대장 사무처리 등) 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건축허가업무 등의 사무를 처리하여 보조기억장치(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건축물정보사항을 확실하게 기록·보관할 수 있는 전자적 정보저장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건축물대장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기록한 경우 그 전산기록을 건축물대장으로 본다.** <개정 2009.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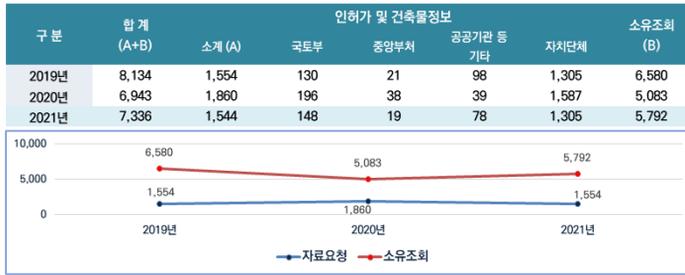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부분을 별도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 부분은 건축물대장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대장 부분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장소에서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소유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사용자의 신원을 관리하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20., 2017. 1. 20.>

- 건축행정 업무 전산화를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이 구축되어 전자문서 방식의 행정처리, 통합적 건축행정정보 관리가 가능

□ 건축행정시스템은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업무를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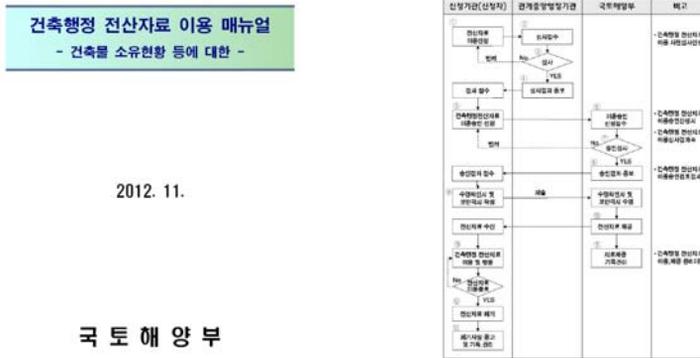
- 2021년 자료 제공 요청 건수는 7,336건이며, 인허가 및 대장 정보는 2.5명의 전담인력이 하루 6.2건, 소유조회는 2명 겸무인력이 하루 23.2건 제공



[그림 1-3] 2019-2021년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 및 소유조회 건수  
출처 : 연구진 작성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성 제고 필요

- 현행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매뉴얼’은 2013년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정 공고 이후 미개정
- 데이터경제 활성화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요청은 증가하나, 데이터 민감도 정의 및 제공절차가 10년 전 기준에 머물러 원활한 데이터 제공 및 이용 불가



[그림 1-4]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및 이용 절차도  
출처 : 국토해양부(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건축물 소유현황 등에 대한-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제도 개선 필요

□ 건축행정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으로 제공 가능한 전산자료 범위 확대 예정

- 국토부 및 245개 자치단체에서 분산운영되는 건축행정시스템을 2019~2022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으로 통합 재구축 추진

- 기존 인터넷 기반 건축행정을 통합 클라우드화 함으로써 전국단위 건축행정 및 4차 산업지원
- 제공 가능 전산자료가 전국단위로 확대됨에 따라 제공 절차 및 자료 보안과 자료의 민감도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중요성 대두
  - 향후 자료 제공 요청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전산자료 유형 및 이용기관 유형별 제공 기준 구체화, 안전관리 대책 강화 필요성 증대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현행 매뉴얼은 작성이후 개정된 바 없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미반영
  - 「공공데이터법」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이 작성된 2012년보다 늦은 2013년 시행되어 현행 매뉴얼에 반영되지 못함
  - 기존 매뉴얼의 근거법령인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시행 및 개정시기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은 「개인정보 보호법」까지 반영

[표 1-1] 관련 법·제도 연혁

관련 법·제도	연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998.01.01. 시행
건축법 제31조(건축행정 전산화)	2008.03.21. 전부개정
개인정보보호법	2011.09.30. 시행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2012.11. 작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013.10.31. 시행

\* 출처 : 연구진 작성

- 이에 따라 현행 매뉴얼의 데이터 제공 대상은 「공공데이터법」의 데이터 이용 대상인 민간 포함되지 않는 등 개선 필요사항 다수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 기준 미흡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은 「건축법」 제32조제2항에 근거하며,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를 따르나, 구체적 기준 전무
- 현행 건축행정시스템의 전산자료 공개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전산자료의 공개)를 통해 기준을 명시하였으나, 구체적 내용 전무
  -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건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명시하

는 등 구체적 내용이 없으며,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은 2011.03.29. 타법폐지

- 「공공데이터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하여 건축행정전산 자료 중 제공가능 목록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기준이 미흡하여 자료 제공에 따른 문제사례 발생

- 외국인 건축물보유 현황 국회요구 제공(‘21), 행안부 도면(배치도) 제공(‘21) 등 자료제공 문제 사례는 민감정보 제공 절차 및 기준 미흡이 초래
- 향후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의 전국단위 자료제공은 유사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기준의 시급한 정비 필요

□ 건축행정시스템의 자료제공에 대한 기준과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건축행정 전산 자료 이용 매뉴얼 등 법·제도 정비 필요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에 관한 법적 근거 정비를 위해 전산자료 제공 근거 법 및 관련 조항의 개정 필요
  - 「건축법」 제32조, 제33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등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검토를 통한 현행화, 관계 법령 반영, 필요
  - 「공공데이터법」을 반영한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 기준 및 절차 마련 등

#### 4) 연구의 목적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방안 모색

- 전산자료 제공을 위한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의 관계 조항 정비

□ 건축행정시스템 자료제공 절차 등 매뉴얼 정비 방안 모색

- 2012년 11월 작성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정비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안

- 개인정보 포함자료 및 도면정보 제공 및 활용방안 모색

##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기준 마련
  - 자료제공 대상이 되는 전국단위 건축행정 전산자료 목록화
  - 전산자료 종류에 따른 민감정보 등급 구분
  - 민감정보 등급에 따른 자료제공 심사기준 및 절차 도출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정비
  - 타 기관 시스템 이용 매뉴얼 사례조사
  - 「공공데이터법」을 반영한 이용 매뉴얼로 개정, 안전관리 대책 강화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신청서, 보안각서 등 정산자료 요청 서식 재작성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 공공정보공개 및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타법 사례 조사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근거 제공을 위한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제안

### 2)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및 사례조사
  - 시스템이용, 정보공개 및 자료제공에 대한 타 기관·시스템 매뉴얼 검토
  - 정보공개 목록 및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적용사례 조사

□ 관계 법·제도 검토

- 「공공데이터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공개 및 자료제공에 대한 관계 법령 검토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등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관련 법령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 건축행정시스템, 건축행정 전산자료, 공공기관 정보공개 등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매뉴얼 개선 및 법·제도 개선방향 검토
- 타 기관 자료제공 현황 및 제공절차 인터뷰

□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

- 건축행정시스템 담당기관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와 실제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합리적 매뉴얼 정비방안 모색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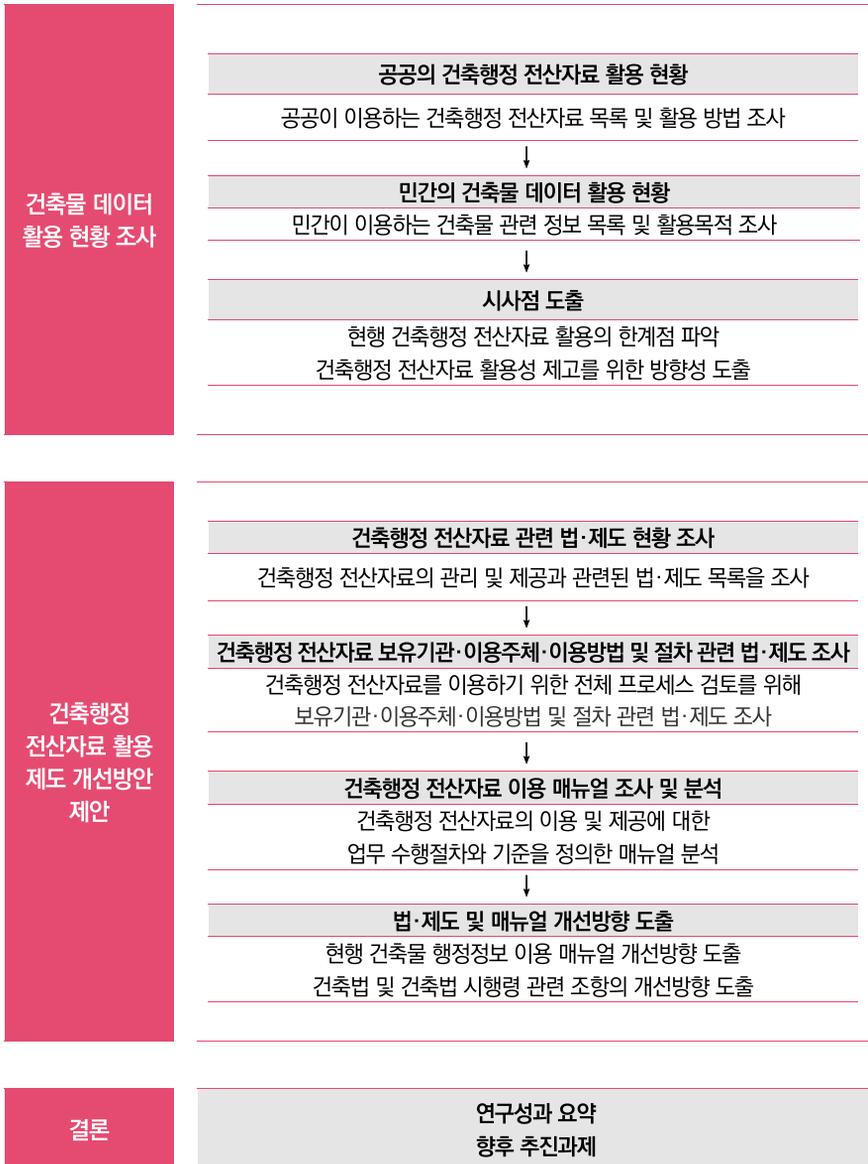
□ 선행연구 동향

- (선행연구) 건축행정정보 활용방안,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모색 등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매뉴얼 및 제도정비 연구는 없음
- (본 연구의 차별성)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 제고를 위해 기존 매뉴얼 개정 및 관련 법·제도 제·개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표 1-2] 주요 선행연구 및 차별성

구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 건축행정정보의 정책적 활용 및 건축통계개선방안 연구	- 문헌연구 - 사례조사 - 건축물 정보 현황 분석	- GIS를 활용한 대국민 건축물 정보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 건축행정정보의 기관간 공동이용 체계 구축방향 검토
	- 연구자(년도): 조상규·성은영(2012)	- 전문가 자문	
	- 연구목적: 중앙정부 차원의 건축행정정보 활용방안 마련 및 시행체계구축 제안		
	-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 방안 연구	- 문헌연구 - 설문조사 및 민원분석 - 관련 해외사례 조사	- 건축행정서비스 수요자의 불편사항 및 개선요구 검토 - 담당조직 운영현황 분석
	- 연구자(년도): 이여경·이상민·차주영(2017)	- 전문가 자문	- 해외 건축행정서비스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연구목적: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마련		-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제안
	-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범위 확대방안 연구	- 문헌연구 - 정부정책 등 사례조사 - 관련 법·제도 조사	- 데이터경제 개념 및 활성화 정책 검토 - 건축행정정보 구축현황과 개방확대 방향 연구
	- 연구자(년도): 김영현·조상규·김신성·송유미(2020)	- 건축물 정보 개방 현황 분석 - 전문가 자문	- 건축물 도면정보 개방범위 확대 방향 연구
	- 연구목적: 건축행정정보 개방 현황 파악 및 확대 가능성 모색		
본 연구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정비 방안 연구	- 관련 문헌 및 사례조사 - 관계 법·제도 검토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기준 마련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정비
	- 연구목적: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및 건축행정시스템 자료제공 절차 등 매뉴얼 정비	- 전문가 자문회의 - 관련 부처 및 기관 협의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을 위한 관련 법제 정비

## 4. 연구의 흐름



[그림 1-5] 연구의 흐름

출처: 연구진 작성



---

# 제2장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조사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3. 시사점
- 

## 1.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현황

### 1) 건축물 통계 관리 및 활용

#### □ 건축물 현황 통계 보도자료<sup>4)</sup>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작성하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승인통계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 현황자료를 기초로 조사하는 보고통계
  - 매년 3월마다 공표하는 자료로, 1985년 최초 개발
  - 매년 1월 전년도 말 기준 건축물대장 기초자료를 취합 후 데이터 검증 및 자료 집계 과정을 거쳐 보도자료 작성
- 건축물 현황 통계 보도자료는 “전국 건축물에 대한 용도별, 층수 등에 관한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건축경기예측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을 목적으로 개발<sup>5)</sup>

---

4) 국토교통부, 2020, 「건축물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p.2-4

- 용도별, 면적별 등 건축물 현황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건축경기를 예측하고, 시계열 경기동향을 파악
- 특정 지역의 건축관련 상권분석 및 인테리어, 철거업체 등 실사업자 사업관련 자료로 활용
- 중앙정부기관 및 지자체는 건축경기 예측 및 관련 정책 기획, 국민과 학계의 경우 상권분석 및 관련 연구 수행에 주로 활용

#### □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보도자료<sup>6)</sup>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에서 작성하는 「통계법」 제18조에 의한 일반통계로, 건축, 주택 인허가 승인 및 착공 현황 기초로 조사하는 보고통계
  - 매월 25일마다 공표하는 자료로, 1962년 최초 개발된 통계자료
  - 매달 1일~15일에 전월 지자체 인허가 승인자료를 집계하고, 이후 전국 지자체 통계 산출 및 검증과정을 통해 보도자료 작성
-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보도자료는 “건설부문투자동향 및 경제동향분석, 국민소득 추계 및 건축행정의 정책자료, 건축자재수급, 생산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sup>7)</sup>
  - 건설경제동향과 자재 및 주택수급 동향을 진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 가능
  - 건축물 현황 통계와 마찬가지로 특정 지역의 건축관련 상권분석 및 인테리어, 철거업체 등 실사업자 사업관련 자료로 활용
-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는 국내 다른 분야 유사 사례가 없는 통계

## 2)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활용

#### □ 세움터 시스템 연계 현황

- 2021년도에 추가된 세움터 연계시스템은 View Table 15건, 웹서비스 5건, 행정정보공공이용 3건의 총 23건임

5) 국토교통부, 2020, 「건축물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3

6) 국토교통부, 2020,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p.2-3

7) 국토교통부, 2020,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통계정보보고서, p.2

- 총 58개 기관이 국토교통부 세움터 시스템과 연계하여 건축물대장 등 건축 행정 전산자료 확보 및 활용
  - 국토교통부 토지행정지원시스템 등 30건, 행정안전부 새주소시스템 등 19건을 포함하여 총 131개 시스템 연계 지원

[표 2-1] 연계 시스템 및 활용 목적

기관명	연계 시스템 및 활용 목적
국토교통부	토지행정지원시스템(KLIS),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키스콘), 건축데이터민간개방,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 공적공간 관리시스템, 과태료부과시스템, 국가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공형소음대책지역)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사업, 부동산거래관리 시스템(RTMS), 부동산종합공부 시스템(일사편리), 소방민원시스템, 임대등록시스템 (RRS)-렌트홀, 주택소유 확인 시스템(HOMS), 한국토지정보 시스템(KLIS), 토지수용재결업무,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 시스템(CSI),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개발제한구역(GB)
행정안전부	시군구업무 연계 시스템, 무인민원, 정부24, 새주소시스템 (KAIS), 시군구민원행정(NTIS-IRAIS)시스템, 시도민원행정 시스템, 인사시스템, 전자지불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온나라), 주민행정시스템, 청백-e 시스템(IBMS), 표준지방세 시스템, 행정공간정보 체계 구축,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e하나로민원,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통합 안내 시스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감사원	상시 서면감사 및 실지감사 활용
고용노동부	재산세 관리 프로젝트, 과태료관리시스템
국방부	건축물대장 확인, 국방부 건축물대장 생성
기술보증기금	채무관계자에 대한 (사전)구상권 행사, 기술보증 및 평가업무
기획재정부	국유재산통합 관리 시스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망 시스템(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의료급여 채권관리
국가보훈처	보훈대부사업(wsbul)
국민안전처	빅데이터를 활용한 화재위험도 예측시스템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료제품 법령 의무위반 과태료 체납관리
신용보증기금	채무관계자의 재산조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신용보증, 신용조사 심사
인사혁신처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토지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으로 인한 구상권 행사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건축물대장 확인
통계청	통계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	수질요염총량관리 전산 시스템
국토지리정보원	지형, 지물 변동관리시스템
대법원	등기시스템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조사선정시스템, 주택가격동향조사업무, 건축물대장 확인, 임대사업자 통계시스템, 주택청약시스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양육비 채무자 임대사업자 등록정보
교통안전공단	부설주차장 현황 관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수질요염총량관리 전산 시스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액, 상습체납자의 인적 공개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대한법률구조공단	건축물대장 확인
한국도로공사	국유재산관리처분
한국무역보험공사	채무관계자 재산소재 파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위험공사 및 산재미가입 사업자 사전 파악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재구축사업, 공유재산 관리 및 처분, 국유재산(증권) 관리·처분
한국전력공사	송배전시스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업무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통계시스템(HIS)
환경부(환경공단)	탄소포인트제 운영 시스템
농림축산검역본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KAHIS)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비용 미수금 대지급금의 구상 및 결산 처분
건축공간연구원	통계시스템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자격등록 시스템
여신금융협회	가계대출일반, 기업대출일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 (행정문화교육민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원보험료(기타 징수금) 체납처분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절차 간소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토지수용재결업무
한국산업은행	여신업무(금융기관 고객사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건축물대장 확인, 연구개발특구 입주민원
한국장학재단	저소득층 학자금 대출 신청, 저소득층 장학금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자금 융자신청
소방청	모바일현장지휘통제시스템(mnfa), 소방안전정보시스템(nfa), 소방청 소방안전정보시스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행정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전문자격 응시·면제요건 확인을 위한 경력증명 (소방시설관리사), 건축인허가 착공신고 민원 관계전문기술자 자격진위여부 확인
국세청	내부전산정보시스템(NTIS)
솔루션	이메일 / SMS 시스템, 공인인증, 민원인 SSO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부정수급반환금 징수업무
환경부(환경공단)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시스템(LEV)
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관리 처분 (개발), 국유재산 관리 처분 (대부료, 변상금 징수)
한국산업단지공단	공장설립온라인 지원시스템(팩토리온 FAC)
산림청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

\* 출처 : 세움터(2021). 2021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원료보고서, p. 129~132

- 시스템 연계를 통한 건축행정정보 활용은 대략적인 활용목적을 추정가능할 뿐 명확한 활용 방법과 목적을 확인할 수 없음
  - 소방청의 경우 건축물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자재, 공법, 관리정보 등 특성을 파악을 위해 건축행정정보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

## □ 행정안전부 상세주소사업 활용

- 행정안전부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도로명주소를 이용하여 기존 지번주소를 대체하고자 함
  -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도로명주소, 국가기초구역, 국가지점번호 및 사물 주소의 표기·사용·관리·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통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함
- 도로명주소는 건축물 단위의 도로명주소와 동, 층, 호 정보가 기입된 상세주소로 구분 가능
  - 도로명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명, 건물번호 및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표기하는 주소”로 정의<sup>8)</sup>
  -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건물등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된 동(棟)번호, 층수 또는 호(號)수”로 정의<sup>9)</sup>
- 「도로명주소법」제25조 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를 종합적으로 수록한 도면인 주소정보기본도를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함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4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주소기본도는 전산처리장치에 따라 전산화된 도면으로 작성 및 관리되어야 함
- 행정안전부는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주소정보기본도 개선을 위한 상세주소사업을 진행
  - ‘건물등과 건물번호, 건물군, 동번호·층수·호수 등 상세주소, 출입구 및 실내 이동경로 등’이 포함되도록 주소정보기본도를 개선
  - 세움터 건축물 도면정보를 활용하여 건축물 층수, 호수, 출입구 및 실내 이동경로 등 상세주소 구축 방법 모색 중

8) 「도로명주소법」제2조(정의) 제7호

9) 「도로명주소법」제2조(정의) 제6호

## 2. 민간의 건축물 데이터 활용 현황

### 1) 부동산 마케팅 및 밸류에이션 산업

#### □ 개요

- 웹, 앱 등 온라인 플랫폼 기반 부동산 정보 수집, 맞춤형 부동산정보 제공 및 증개를 통한 부동산 거래 지원
- 부동산 밸류에이션은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여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투자자문, 토기 개발 솔루션, 자동화 건축 설계” 지원<sup>10)</sup>

#### □ 부동산 밸류에이션

- 빅밸류<sup>11)</sup>
  - 부동산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시세정보를 제공하고, 비정형 부동산에 대한 시세산정 솔루션 개발
  - 부동산 공간 빅데이터에 AI 분석기술을 접목하여 부동산 자동시세 추정, 필지 단위 사업지 및 수익성 분석, 권역별 매출 추정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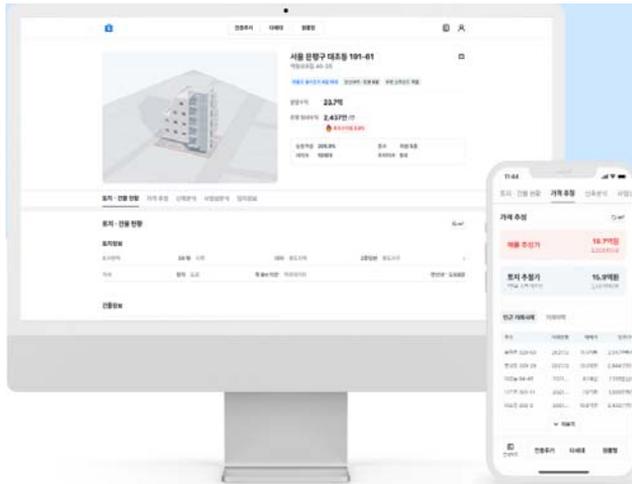
[그림 2-1] 빅밸류 AI LOBIG의 공간정보 기반 매출추정 흐름도

출처: 빅밸류, [http://www.bigvalue.co.kr/img/s\\_process02.png](http://www.bigvalue.co.kr/img/s_process02.png), 2022.10.28. 접속

10) 프롭테크포럼, 2022, 2022 프롭테크 리스트 북, p.5

11) 빅밸류, <http://www.bigvalue.co.kr/>, 2022.09.06. 접속

- 스페이스워크<sup>12)</sup>
  - 스페이스워크는 부동산 개발 솔루션인 랜드북과 인공지능 건축설계 기술과 랜드북을 접목한 엔비디벨로퍼를 서비스함
  - 토지의 물리적 환경, 주변 교통, 관련 건축법, 주변 부동산 시세 등 정보를 활용하여 토지 투자 여부와 비용에 대한 최적의 판단 지원



[그림 2-2] 시가반의 신축 건축계획 예시

출처 : 랜드북, <https://www.landbook.net/promotions/premium> 2022.10.28. 접속

- 밸류맵<sup>13)</sup>
  - 토지 관련 부동산 정보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 시작된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으로, 토지건물 자동가치추정모형을 제공
  - 토지 실거래가, 검색트렌드 등 부동산 거래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며, 소규모 토지에 대한 자동설계 서비스인 AI 건축가설계 서비스를 제공

## □ 부동산 마케팅

- 직방<sup>14)</sup>
  - 2012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직방은 우리나라 프롭테크 선두기업으로 부동산 정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프롭테크 기업임

12) 스페이스워크, <https://spacewalk.tech/>, 2022.09.05. 접속

13) 밸류맵, <https://www.valueupmap.com/>, 2022.09.05. 접속

14) 직방, <https://www.zigbang.com/>, 2022.09.04. 접속

- 모바일 모델하우스, VR 홈투어, 3D 단지투어, 부동산계산기 등 각종 건축물 정보와 빅데이터, 머신러닝, VR, 3D기술을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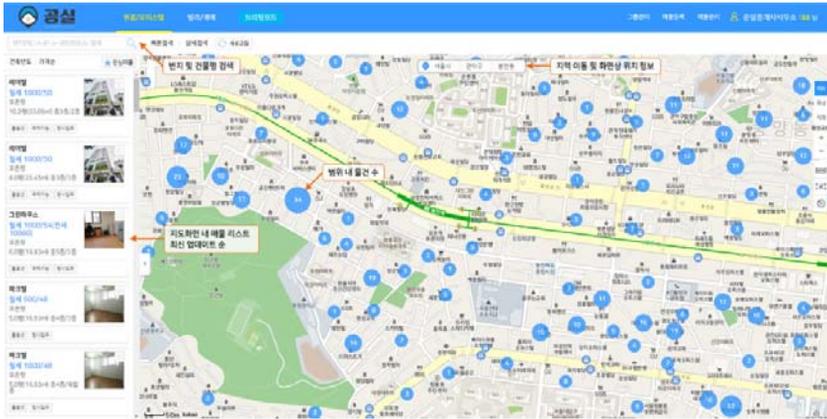
[그림 2-3] 직방의 3D 단지맵 제공화면

출처 : 직방 기술 블로그, <https://medium.com/zigbang/%EC%A7%81%EB%B0%A9-3d-%EB%8B%A8%EC%A7%80%EB%B3%B4%EA%B8%B0-%EA%B0%9C%EB%B0%9C-%EA%B3%BC%EC%A0%95-%EC%86%8C%EA%B0%9C-3b5ded339bc0>, 2022.09.05. 접속

- 부동산플래닛<sup>15)</sup>
  - 빅데이터 및 AI 기술 기반의 부동산 플랫폼으로, 아파트, 주택, 상가, 사무실, 빌딩, 상권, 학군 분석, 부동산뉴스,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제공
  - 전국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및 임대·공실 정보를 수집하고, AI 기반의 전국 토지건물 추정가격 분석 및 GIS 기반 시각화 서비스 제공
- 공실<sup>16)</sup>
  - 데이터기반의 부동산 전보제공 플랫폼으로, 부동산 소유주와 중개사를 연결하여 부동산 임대 및 매매 서비스를 제공
  - 원룸, 빌라,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부동산 유형에 대한 주소, 건물정보, 가격, 사진 등 정보를 제공하며, 지도기반 서비스와 검색기능 제공

15) 부동산플래닛, <https://www.bdsplanet.com/main.ytp>, 2022.09.05. 접속

16) 공실, <https://www.gongsilapp.com/>, 2022.09.05. 접속



[그림 2-4] 공실 플랫폼 이용 실제화면

출처 : 공실, <https://www.gongsilapp.com/>, 2022.09.05. 접속. 서비스 이용하여 연구진 생성

## 2) 부동산 관리 및 공유산업

### □ 개요

- 건축물 시설관리(FM: Facility Management), 아파트 단지 관리, 건축물 임대 및 운영 등 건축물 관리 지원
- 부동산시장과 공유서비스를 접목하여 공간 공유 및 모빌리티 공유 서비스를 지원하는 산업

### □ 부동산 관리

- 홈체크<sup>17)</sup>
  - 기술 기반 주택 점검 및 임대 관리를 메인으로 건축물 자체부터 시설물까지 점검 및 진단하여 건축물 품질을 관리하고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 품질 정보 제공
  - 부동산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거래시 분쟁예방, 비용 절감, 하자 적출 등 효과 입증

17) 홈체크, <https://homecheck.kr/event/dongheng/>, 2022.09.03. 접속



[그림 2-5] 홈체크 서비스 통계

출처 : 홈체크, <https://homecheck.kr/event/dongheng/> 2022.09.03. 접속

- 체크업<sup>18)</sup>
  - 체크업은 부동산, 건축물 시설물 관리 품질 향상을 위한 관리솔루션을 제공하며, 현장 안전관리 최적화 또한 지원
  - 빌딩 생산성을 관리하고 빌딩 관리에 소요비용을 모니터링 및 최적화하는 체크업 서비스와 중대재해예방솔루션인 체크업SAPS를 제공
- 에스엘플랫폼<sup>19)</sup>
  - ICT 기반의 주거용 부동산 관리 전문 기업으로, 주거서비스 운영, 임대운영, 커뮤니티 센터 운영 등 부동산 관련 통합 관리 기술 선도
  - 핸드폰 앱 기반의 시설 예약 및 서비스 이용 기능을 제공하고, 주거시설 입주민과 시설물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제공

## □ 부동산 공유

- 스파크플러스<sup>20)</sup>
  - 업무용 오피스를 중심으로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수행하는 공유오피스 서비스 기업으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며 수요자 맞춤형 오피스 확보를 위한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제공
  - 부동산 계약과 사무화경 구축을 지원하는 오피스 솔루션, 월간 멤버십 형태의 스플라운지, 공유 오피스 내 개별 기업공간을 제공하는 커스텀 오피스 및 프라이빗 오피스 서비스 제공

18) 체크업, <http://www.checkupv.com/>, 2022.09.03. 접속

19) 에스엘플랫폼, <https://www.ssocioliving.com/>, 2022.09.03. 접속

20) 스파크플러스, <https://sparkplus.co/>, 2022.09.06. 접속



[그림 2-6] 스파크플러스의 부동산 컨설팅 서비스

출처: 스파크플러스, <https://sparkplus.co/office-solution/real-estate/>, 2022.09.06. 접속

- 모두의주차장<sup>21)</sup>
  - 주차장 정보 및 주차 공간 공유 등의 매칭 플랫폼 구축하고, 서울 부산 등 지자체와 전국 공영, 민영, 부설주차장 정보를 수집·가공하여 활용
  - 주차 공간 소유자와 운전자 간 주차공간 공유가 가능하도록 데이터 기반차공유사업 협약 체결
- 알파박스<sup>22)</sup>
  - 공유창고 및 셀프 스토리지 전문 기업으로 도시 내에서 짐 보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시민의 좁은 주거공간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의 물건 보관 창고를 제공



[그림 2-7] 알파박스의 공유창고 사례

출처: 알파박스, <https://alphabox.co.kr/>, 2022.09.06. 접속

- 서울, 부산 등 5개 도시에서 공유창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유창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컨테이너를 설계 및 제작

21) 모두의주차장, <https://www.moduparking.com/>, 2022.09.06. 접속

22) 알파박스, <https://alphabox.co.kr/>, 2022.09.06. 접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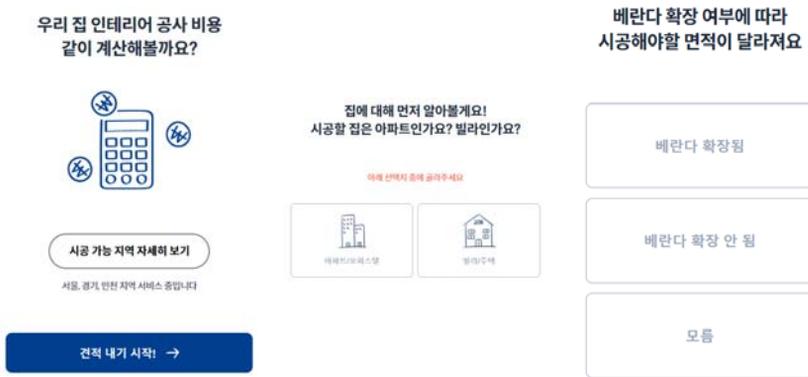
### 3) 인테리어 및 스마트홈 산업

#### □ 개요

- 건축 소품 구매부터 인테리어 3D 디자인 기술까지 제공하며, 웹 기반의 인테리어 중개, 견적 비교 등 서비스 제공
- IoT 및 앱 기반의 스마트홈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AI 기술을 적용한 안전 관리 서비스 제공

#### □ 인테리어

- 하우스텝<sup>23)</sup>
  - 온라인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우스텝은 인테리어를 창호·문틀·욕실 등 10여가지로 세분화해 개별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 제공
  - 인테리어 시공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주택정보 및 자재정보 입력 시 견적을 산출하는 표준견적 시스템 구축



[그림 2-8] 하우스텝의 표준견적 도출 시스템

출처: 하우스텝, <https://www.houstep.co.kr/estimate?page=StartEstimate> 2022.10.28. 접속

- 아파트멘터리<sup>24)</sup>
  - B2C 모듈형 아파트 리모델링 서비스 기업인 아파트멘터리는 도배, 마루 등 아파트 리모델링시 필수적인 주요 공정을 모듈화하여 제공

23) 하우스텝, <https://www.houstep.co.kr/>, 2022.09.06. 접속

24) 아파트멘터리, <https://apartmentary.com/>, 2022.09.06. 접속

- 구축 아파트 전용, 신축 아파트 전용, 주방 전용 등 세 가지 주요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별 맞춤형 모듈 제공
- 리체<sup>25)</sup>
  - 홈퍼니싱 큐레이션을 지원하는 BNPL(Buy Now Pay Later)플랫폼인 로마드를 운영하는 실내 가구 판매 및 인테리어 기업
  - VR/AR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가구 및 건축 공간을 활용한 가상 인테리어 시뮬레이션이 가능

## □ 스마트홈

- 솔그리드<sup>26)</sup>
  - 솔그리드는 에코-스마트 메가시티 전용 플랫폼은 기존 메가시티의 'Eco-smart Megacity'로의 전환 추구
  - 부동산과 태양광 발전 기술을 결합하여 국내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여 발전량과 전력사용량의 균형 제안
- 타디스테크놀로지<sup>27)</sup>
  -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한 충전소 검색 및 충전기 공동이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충전관제서비스 솔루션 제공
  - 전기차 충전 정보를 수집하여 전기차 충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용자들에게 전기차충전 관련 정보 제공
- 모카시스템<sup>28)</sup>
  - 모카시스템은 기존의 건축물 출입 통제 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모바일 시스템으로 개선하여 건축물 보안 서비스 제공
  - “디지털ID, 정보보안, 물리적 보안, 스마트홈 및 스마트 오피스 전반에 대한 서비스 제공” 목표<sup>29)</sup>

25) 리체, <https://www.lomad.co.kr/>, 2022.09.06. 접속

26) 프롭테크포럼, 2022, 2022 프롭테크 리스트 북, p.179

27) 타디스테크놀로지, <https://www.tardistechnology.com/>, 2022.09.06. 접속

28) 모카시스템, <https://www.airfob.com/>, 2022.09.06. 접속

29) 프롭테크포럼, 2022, 2022 프롭테크 리스트 북, p.170

### 3. 시사점

#### □ 건축물 관련 데이터 이용은 공공 및 민간에서 모두 활발

- 공공의 경우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과 300개 이상의 시스템이 연계하여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활용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건축물대장정보의 단순 확인부터 시스템 연계를 통한 지속적 활용 등 단기 및 장기적인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이 확인됨
  - 행정안전부의 주소정보기본도 상세주소사업과 소방청의 소방안전 관련 데이터 연계 사례를 볼 때 도면정보의 활용 요구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부분의 경우 정확한 활용 방법과 용도 및 활용 결과물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은 현행 시스템의 한계로 판단됨
- 민간의 경우 부동산 정보, 거래현황, 용도, 도면정보 등 다양한 건축물 관련 데이터 수요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 창출
  - 부동산 마케팅, 밸류에이션 산업과 같이 기존 부동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최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데이터 활용
  - 건축물 및 부동산 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건축물 관리 서비스를 확대하고 부동산 및 시설 공유산업 확장
  - 건축물 도면, 건축물 현황과 AR/VR 기술 및 AI 기술을 접목하여 설계 자동화, 인테리어 시뮬레이션,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도모

####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의 한계

- 공공의 경우 다양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중이나, 세부적인 이용자료, 활용방법 및 목적 불분명
  - 공공에서 사용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목록, 활용방법 및 활용 목적이 불분명하여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요 파악 불가능

- 일부 기관의 경우 건축물 도면 및 배치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건축물 도면정보 수요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민간은 다양한 건축물 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비율은 낮음
  - 건축물 용도 등 일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으로 추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기업이 부동산 시세, 토지정보, 건축물 임대 관련 정보 사용
  - 건축물 도면 및 배치도 관련 정보를 이용하여 건축물 자동설계 AI, 건축물 3차원 정보 구축을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행법상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개선 방안

- 이용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목록과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활용 방법·목적·결과 등 정보 축적 방안 마련 필요
- 민간은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활용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민간이용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제공 확대방안 모색 필요



---

# 제3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관련 법·제도분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분석
- 

##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처리 및 제공 근거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을 통해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근거 명시
  - 「건축법」제32조 제1항은 허가권자가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업무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
  - 「건축법 시행규칙」제22조의2 제1항은 허가권자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산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는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법」제32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

###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정보통신망 이용환경의 미비,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건축허가 등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8. 5.]

[종전 제22조의2는 제22조의3으로 이동 <2010. 8. 5.>]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6조 (이용 및 위탁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운영기관의 장은 「건축법」 제31조, 「주택법」 제86조1항에 의한 건축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건축법 제32조, 주택법 시행령 제116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건축행정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전산자료의 이용 근거 명시

- 「건축법」 제32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전산자료(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의 이용에 대한 승인 절차와 사용료 징수를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건축법 제32조 제6항에서 위임한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서 서식 규정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는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에 대하여 건축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을 인용

###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1.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국토교통부장관
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3.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산자료의 이용 대상 범위와 심사기준, 승인절차, 사용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산자료의 이용 목적 및 근거
2.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3.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4.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건축법 시행규칙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영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얻으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14., 2011. 6. 29., 2013. 3. 23., 2014. 10. 15.>

[본조신설 2006. 5. 12.]

[제22조의2에서 이동 <2010. 8. 5.>]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15조 (전산자료의 공개)

전산자료의 공개 및 제공은 건축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대한 규정 명시

- 「건축법」제33조는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
- 「건축법 시행령」제22조의3은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

## 건축법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제32조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0.>
-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그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산자료(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8. 10. 29.]

## 2)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 정의

□ 이용 대상 전산자료 기준을 「건축법」 및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에 명시

- 건축법 제32조 제1항과 제2항은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로 전산자료를 정의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제2조 제16호는 “건축·주택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등 업무와 관련한 자료들을 주전산기에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으로 전산자료를 정의

□ 전산자료 이용 주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7가지로 구분 가능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 없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헌법상 독립기관
- 공공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sup>30)</sup>
- 공동이용 대상기관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행정기관등”)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sup>31)</sup>
-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sup>32)</sup>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제3자
- 국회
  -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3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3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3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 2.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분석

###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개요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적극적 정보공개 원칙을 천명<sup>33)</sup>
  - 「정보공개법」은 국민이 공공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민의 국정참여, 국정운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 □ 공공기관의 정의와 의무

- 「정보공개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을 정의하고 있음
  - 「정보공개법」제2조(정의)제3호에 따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보공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공정보를 공개해야 함

33) 손현진(2013).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 「정보공개법」에서 명시한 정보의 범위를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으로 정의
  - 단, 「정보공개법」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열거된 정보는 공개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전문개정 2013. 8. 6.]

##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개요

- 공공정보의 개방 및 이용을 통한 신산업 창출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정책 추진
  -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이 2010년 수립되는 등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추진<sup>34)</sup>
  - 공공데이터의 민간 개방은 미국, EU, 영국 등 해외 선진국에서 기 시행중인 정책이었으며, 우리나라는 정부 3.0 정책을 통해 공공데이터 민간개방 추진
-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2013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정
  - 정부 3.0정책의 공공데이터 개방 기초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데이터법」 제정
  - 공공데이터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공공데이터를 자유롭게 변형 및 이용 가능
-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 보장 및 민간 활용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공공데이터법」을 통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생산한 고품질 데이터인 공공데이터를 개방함으로써 민간의 이용 및 상업활동을 지원<sup>35)</sup>

34) 방송통신위원회(2010).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공공정보 민간활용 촉진 종합계획」 마련-

35) 최유·차현숙(2016).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주체, 이용 주체,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표 2-2] 공공데이터법의 주요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주체	제공 공공기관	제2조(정의) 제1항
	이용 국민(누구나)	제3조(기본원칙)
대상	공공데이터	제2조(정의) 제2항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출처 : 연구진 작성

#### □ 공공기관의 정의와 의무

- 「공공데이터법」은 공공데이터를 제공해야하는 공공기관에 대해 정의
  - 「공공데이터법」제2조(정의) 제1호에서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데이터법」이 정의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위해 데이터를 제공해야함
  - 공공데이터 제공의 기본원칙으로,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 이용의 편리성을 추구하여야하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권의 보편적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에 관한 국민의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 공개된 공공데이터에 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접근제한이나 차단 등 이용저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공기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또는 제28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데이터의 영리적 이용인 경우에도 이를 금지 또는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공공데이터의 정의와 범위

- 공공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나 정보를 의미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20. 6. 9.>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
  -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
  -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통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를 기술
  -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법」 제18조와 제19조를 통해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을 작성·공표해야함
-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4조의2를 통해 공공데이터 활용 기업, 연구기관, 민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기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공공데이터의 우선적 제공 및 필요한 공공데이터의 가공
  2. 민간 데이터와 공공데이터의 융합 및 분석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
  4. 창업 및 기업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5. 마케팅 및 홍보 활동
  6. 민간 투자 유치
  7. 해외시장 진출
  8. 그 밖에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창업자가 그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업 성공 기업의 재투자 유도 및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

구기관 및 산업체 등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하 “산·학·연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산·학·연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공공데이터 창업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
2. 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교육
3. 창업 동아리 운영 지원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과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창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⑦ 창업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 3) 개인정보 보호법

#### □ 개요

-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 규정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기 위해 2011년 제정  
-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의 후신으로 볼 수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제정<sup>36)</sup>
-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 그리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목적으로 공공과 민간 모든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원칙을 규정

####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4.>

#### □ 개인정보의 정의 및 범위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여야 하며, 정보의 내용과 형태 등에 대한 제한 없음
- 해당 정보만으로는 개인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할지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이는 가명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에 포함

36)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인정보의 처리 및 제공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함<sup>37)</sup>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음

##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3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37)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정의)

- 단, 가명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처리할 수 있음<sup>38)</sup>
  - 통계작성은 특정 집단에 대한 수량적 정보를 의미하며, 이름 및 연락처와 같은 개별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고, 시장조사와 같은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과학적 연구는 기술개발, 실증과 함께 산업적 목적의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을 위한 사용을 포함
  - 공익적 기록보존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단체 등이 일반적인 공익을 위해 지속적인 열람 가치가 있는 기록을 보존하는 것을 의미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4.]

38)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분석

#### □ 현행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은 4개 장으로 구성됨

- 제1장 총칙: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의 배경 및 목적 등 매뉴얼 정의 근거 및 관련 용어 정의
- 제2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의 기본 개념 등 각종 기준과 기관의 역할을 설명
- 제3장 전산자료 이용승인 절차: 전산자료 이용 관련 신청, 심사, 승인, 이용 등에 대한 절차를 설명
- 제4장 전산자료 이용 관리 및 감독: 전산자료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기록, 관리, 지도, 감독에 관한 내용 서술

#### □ 기존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을 분석하여 개선 필요사항 도출 필요

- 기존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과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관련 법·제도 및 공공정보 제공 관련 법·제도 비교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을 장별 분석하여 현행 법·제도에 근거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1) 총칙

#### □ 개요

-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업무 수행절차와 기준을 정의한 매뉴얼
  - 건축허가, 건축물대장 업무 등의 전산처리로 인하여 생성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전산자료가 대상
- 전산자료의 이용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체계화
  - 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검토, 심사, 제공, 관리, 폐기 등 업무 수행절차 제시

-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타 용도 사용과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관리 및 이용 완료 후 폐기 등 조치를 명시
-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 및 보호를 위하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시하였으나, 2012.11. 이후 현재(2022년)까지 미개정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근거 법령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전자정부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였으나,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작성 시기 문제로 「공공데이터법」 제외

[표 2-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근거 법령과 주요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항
건축법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정의, 이용 절차, 개인정보 보호, 사 용료 징수 등에 대하여 규정	제32조
	-전산자료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	제33조
건축법 시행령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의 각 단계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의	제22조의2
	-대량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제외)를 지도·감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료 제출, 현지조사 등의 절차를 규정	제22조의3
	-전자정부의 대상인 행정기관과 공공기관(“행정기관등”)을 정의	제2조
전자정부법	-다른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등 기관과의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규정	제36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공동 이용을 규정	제37조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공 절차를 규정	제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의 제한 및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	제18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제한	제19조
	-개인정보 처리 후 파기 의무와 그 절차를 규정	제21조
정보공개법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적극적 공개 의무를 규정	제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처리 의무와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을 규정	제6조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정의와 비공개 세부 기준의 수립·공개·점검 의무를 규정	제9조

출처 : 국토해양부(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 □ 이용 주체

-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과 동일한 기관으로, 행정기관, 공공기관, 은행, 기타 대상기관으로 구분

[표 2-4]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대상과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조항
행정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
은행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은행법 제8조 제1항
기타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

출처 : 국토해양부(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 현행법상 이용주체에 대한 세분화 및 재분류 필요

### □ 이용 대상 전산자료

- 건축인허가사항, 건축물대장, 건축물 소유 현황 정보 등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이용하여 관리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함
  - 매뉴얼은 “건축물 소유현황 등에 대한”이라는 부제로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 자료의 이용에 대한 내용임을 강조

## □ 전산자료 제공 방법

-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우선 이용
  - 전자정부법과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으나, 전산자료 이용 주체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기관과 동일
  -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도록 규정
- 부득이하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 주체별로 별도의 방법으로 제공
  - 단,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에 따라 요청한 전산자료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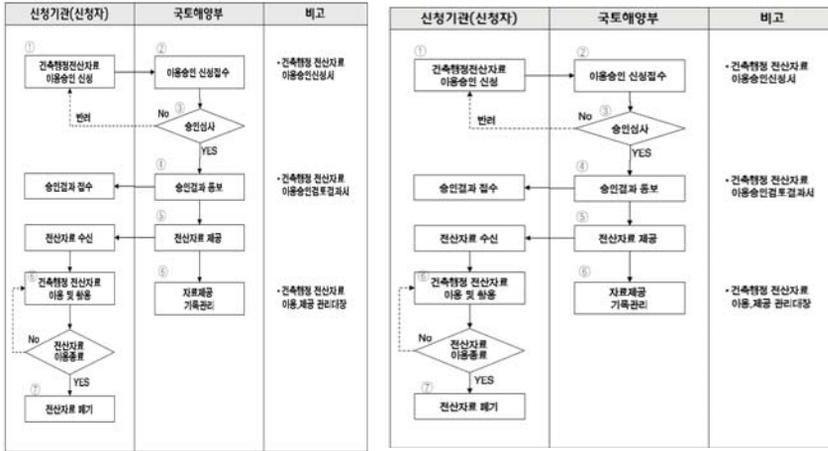
## 3) 전산자료 이용승인 절차

### □ 전산자료 이용 절차

- 공사, 공단, 협회, 은행 등의 민간기관은 심사 및 승인 절차를 거쳐 전산자료 수령<sup>39)</sup>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 신청 후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승인 신청
  - 전산자료 수령확인서(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 생략) 및 보안각서 제출 후 전산자료 수령
  - 전산자료 이용 후 폐기

---

39) 전자정부법과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은 공사, 공단 등을 공공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용 절차에서는 다양한 성격의 기관을 아울러 민간기관으로 통칭



[그림 2-9] 이용절차도: (좌) 공사, 공단, 협회, 은행 등의 민간기관의 경우, (우)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출처 : 국토해양부(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p. 8, 9

-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생략하며, 나머지 절차는 민간기관과 동일
  -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심사신청 제외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에 근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 건축법에서는 심사의 면제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의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심사결과를 첨부하는 대신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이용승인신청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건축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않음<sup>40)</sup>
  - 매뉴얼에 따르면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생략

####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 절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 신청
  - 공사, 공단, 협회, 은행 등의 민간기관은 전산자료 이용 신청 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함

40) 매뉴얼은 “건축법 제22조의2”로 오기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심사 신청서'에 다음의 내용을 작성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 필요
- 심사 및 결과 통보
  - 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개인정보보호 기준 적합, 안전한 이용 및 관리대책 수립 등의 기준으로 심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 15일 이내에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심사 결과표'에 신청 내용, 심사 평가, 결과의견을 작성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단, 「건축법」 및 「전자정부법」에 따른 특정 기관은 심사신청 생략 가능
  - 「건축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생략
  -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은 심사 생략

#### □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결과 적합 평가를 받은 자는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전산자료 이용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생략되고, 심사 결과 없이 이용승인신청서만으로 승인 신청 가능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승인 신청서'는 신청인 사항, 이용기관, 전산자료 이용의 목적, 법적 근거, 전산자료의 범위, 내용, 제공받는 방식, 안전관리대책 등 내용 작성 필요<sup>41)</sup>
- 심사 결과를 첨부한 신청서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국 단위 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단위는 시·도지사, 시·군·구 단위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41) 신청서 양식이 개정되었으나, 매뉴얼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과거 양식을 첨부



□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

-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용하고자 하는 전산자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아야 함
  - 단, 개인<sup>42)</sup>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대책 마련 필요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의 이용 신청을 심사할 때 심사 및 제공방법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승인 결과 통보 및 전산자료 수령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승인 결과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승인 검토 결과서'로 신청인에게 승인 결과 통보
  - 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필요 사항, 정보·개인정보 보호 조치, 이용 방법·보관·폐기 사항 등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으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음

[서식 2-11] 건축행정 전산자료제공 확인서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			
자료이용 신청사항	신청일	작성기관(신청자) : <input type="text"/>	제출기관
	비밀유지	비밀유지기간 : <input type="text"/>	
신청자료 제공사항	제공일	작성기관(제공자) : <input type="text"/>	제출일자
	제공내용	제공내용 : <input type="text"/>	
<p>「건축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에 의해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귀 기관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받았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해양부장관 귀하</p> <p>확인자 기관 : <input type="text"/></p> <p>소속 : <input type="text"/></p> <p>성명 :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p>			

[서식 2-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p>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용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습니다.</li> <li>2. 제공받은 전산자료로 획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철수하였으며, 개인의 명리를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li> <li>3. 개인정보로 취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li> <li>4.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준수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내 이용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li> </ol> <p>·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기간 : <input type="text"/></p> <p>· 전산자료관리책임자 : 소속 <input type="text"/> 성명 <input type="text"/></p> <p>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른 것을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국토해양부장관 귀하</p> <p>서명자 기관 : <input type="text"/></p> <p>소속 : <input type="text"/></p> <p>성명 : <input type="text"/> 서명 또는 인</p>

[그림 2-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 (왼쪽), 보안각서 (오른쪽)

출처 : 국토해양부(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p. 25-26

- 전산자료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확인서'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를 작성·서명하여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 확인서 생략

42)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정보주체'로 정의함 (건축법에서 이를 인용하지는 않음)

#### □ 전산자료 이용 및 관리

-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함
  - 전산자료의 총괄관리, 제공·이용·폐기, 이용기관의 이용관리·기록관리, 개인 정보보호 점검·모니터링, 전산자료 이용 감독·보고, 기타 해당 기관의 이용 총괄 등의 업무 수행 및 책임
- 전산자료 이용자는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 유출방지, 목적 외 이용 금지, 제3자 제공 금지, 완료 후 전산자료 폐기할 의무가 있음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별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이용자의 부서의 장과 함께 이용자도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
-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이용 관련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 및 관리해야함
  -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이용·관리 기록 및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용기관의 장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함
- 전산자료 이용기관은 이용이 종료되거나 자료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전산자료를 폐기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법 제21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
  -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며,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록·관리
  -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과 협의 및 그 내용을 기록·관리
- 전산자료를 목적 외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4) 전산자료 이용 관리 및 감독

##### □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이용 승인 기록 관리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 승인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제공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2항은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3항은 15일의 시한을 두고 있으나 매뉴얼은 시한에 대한 언급 없음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대한 현지조사를 할 경우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목적·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3 제4항은 7일 전까지의 시한을 두고 있으나, 매뉴얼은 시한을 언급 없음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

# 제4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 개선방안 제안

1.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3.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 

### 1.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 1) 이용 대상 전산자료의 민감도 구분 기준

- 시스템 연계를 통한 전산자료 이용은 자료에 따라 현실적인 민감도 정의 필요
  - 건축행정 시스템과 연계하여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의 경우, 전산자료 제공 행위의 부담 및 민감성 발생
  - 전산자료 보유기관과 대량/실시간 전산자료 제공 및 이용에 대한 협의를 통하여 시스템 연계 방식 이용 가능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에서 제공하는 행정정보 유통 서비스 이용 절차를 따를 수 있음
    -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다양한 이용주체의 시스템 연계는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OPEN API를 통하여 대응할 수 있음

□ 소유자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의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대량 이용 신청은 민감도가 높아 별도의 구분 필요

- 건축물대장 발급 시 제공되는 소유자 개인정보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에 해당하는 민감자료
  - 건축물대장 발급 시 누구에게나 현재 소유자의 성명, 주민(법인)등록번호 앞자리(생년월일, 성별구분) 등을 단 건 제공
  - 개인정보의 제공 및 이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다른 법령에 근거하는 경우 가능
-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전국 또는 지역 단위 대량 이용 시 소유자 개인정보 등 민감자료 대량 유출 경계 필요
  - 「건축법」은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 이용 가능성도 상정하고 있어, 소유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의 대량 이용 신청 시 승인 기준 및 절차 필요

□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 평면도(주거 층 제외)의 대량 제공은 민감도가 높아, 별도의 승인 기준 및 절차 필요

- 건축물현황도 발급 시 전산자료 보유기관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누구에게나 배치도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주거 층 제외)를 단 건 제공
- 건축물현황도에는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되어 제공 및 이용에 제한이 있으나, 다른 법령에 근거한 이용 신청은 발생 가능
  -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해당 법령 내용 검토 및 판단하여 승인 필요

□ 건축물현황도 중 주거 층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는 민감도가 매우 높으나, 전산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별도의 이용 승인 절차 마련 필요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 제1호에 따라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서 지칭하는 개인정보에 해당
  - 「건축법」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주거 층 평면도는 제공 및 이용의 민감도가 매우 높은 전산자료
  - 건축물현황도 중 주거 층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는 소유자 및 거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건축법」에 따라 본인 소유 건축물 또는 전산자료 보유기관 발급 담당자의 승인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나, 대량 제공 관련 절차 미비
  - 전국 또는 지역 단위 전산자료 대량 제공의 경우 해당 자격을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자료 이용 어려움
  - 다른 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 등이 목적으로 주거 층 평면도 등의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법령 검토 및 판단 필요

## 2) 이용 대상 전산자료 민감도에 근거한 전산자료 목록 유형화

###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해 개방하는 전산자료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개요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은 건축행정 시스템(세움터)의 전산자료를 공공 데이터로 개방하는 서비스
  - 국토부 세움터와 245개 지자체의 세움터 시스템에 있는 전산자료를 추출 및 정제하여 매년, 매월, 수시 단위 제공
-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제공 데이터 목록
  - 2022년 9월 현재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는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폐쇄말소대장, 건물에너지, 건축물유지관리, 건축물현황도 등

[표 3-1]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제공 데이터

구분	전산자료 목록	비고
건축인허가	기본개요, 동별개요, 층별개요, 호별개요, 대수선, 공작물관리대장, 철거멸실관리대장, 가설건축물, 오수정화시설, 주차장, 부설주차장, 전유공용면적, 호별전유공용면적, 지역지구구역, 도로대장, 대지위치, 주택유형	
주택인허가	기본개요, 동별개요, 층별개요, 호별개요, 부대시설, 오수정화시설, 주차장, 부설주차장, 전유공용면적, 행위호전유공용면적, 행위개요, 관리공동형별개요, 관리공동부대복리시설, 지역지구구역, 대지위치, 복리분양시설	
건축물대장	기본개요, 총괄표제부, 표제부, 층별개요, 부속지번, 전유공용면적, 오수정화시설, 공동주택가격, 전유부,	소유자구분정보는 대용량 원시데이터로만 제공

	지역지구구역, 소유지구분정보	
폐쇄말소대상	기본개요, 총괄표제부, 표제부, 총별개요, 부속지번, 전유공용면적, 오수정화시설, 전유부, 공동주택가격, 지역지구구역	
건물에너지	전기에너지, 가스에너지	
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접수, 점검결과, 접수대상건축물, 점검자, 건축물관리대장, 점검기관, 정기점검이력	
건축물현황도	배치도	배치도는 단 건 조회로만 제공. 평면도 미제공.

출처: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https://open.eais.go.kr/opnsvnc/opnSvclnqireView.do?viewType=1> 2022.10.28. 접속.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 개인정보 또는 제3자 저작권을 포함하는 전산자료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는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도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건축물대장 발급 시 현재 소유자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지만,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는 제공하지 않음
  - 건축물현황도 중 주거 층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관계자 외 건축물현황도 발급 불가
- 제3자 저작권을 포함하는 전산자료는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에서 제외되며,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도 대용량 원시데이터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건축물현황도의 경우 건축물 외벽 등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상 전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배치도는 단 건 조회로만 제공
  -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주거 층 제외)의 경우 비관계자의 건축물현황도 발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음

### 3) 전산자료 제공을 위한 전산자료 분류 및 제공 기준·절차 재정리

#### □ 이용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분류

- 이용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는 크게 4가지 유형으로 분류 가능

- 대량/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연계, 세움터 DB, 맞춤형 통계 생산 및 가공, 건축물 현황도의 4가지 유형
- 세움터 DB와 건축물 현황도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유형 세분화 가능
  - 세움터 DB의 경우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와 비포함된 경우로 구분 가능
  - 건축물 현황도의 경우 배치도, 각 층 평면도, 단위세대 평면도로 구분 가능하며 각 층 평면도의 경우 주거 층을 제외한 다중이용 건축물과 기타로 구분 가능

**[표 3-2] 이용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분류**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대량/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연계	-	-
세움터 DB	개인정보 없음 (공공데이터 제공)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포함	-
맞춤형 통계 생산 및 가공	-	-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
	각 층 평면도	다중이용 건축물 (주거 층 제외)
	단위세대 평면도	기타
		-

출처: 연구진 작성

- 시스템 연계를 통한 대량/실시간 전산자료 이용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
  -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 개인정보, 제3자 저작권 없는 전산자료의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
  - 공공데이터로 이미 개방한 전산자료의 경우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 공공데이터로 개방되어야 하나 누락된 전산자료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용 신청 절차를 따르나,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하여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
  -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가공 의무가 없는 맞춤형 통계 생산 및 가공의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 내부(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이용만 대응

- 기타 이용주체는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

□ 개인정보, 제3자 저작권 포함한 전산자료 자료제공 기준 및 절차는 이용 신청 및 제공하는 전산자료 유형의 민감도에 따라, 서로 다른 수준의 검토 절차 적용

- 개인정보를 포함한 세움터 DB 자료 이용 신청 시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대상기관은 전산자료 보유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승인 여부 검토
  -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개인정보 이용 신청시 가명정보 이용 계획 등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제공 여부 판단
  - 건축물현황도 발급을 통하여 단 건 제공하고 있는 배치도 및 다중이용건축물의 평면도(주거 층 제외)에 대한 이용 신청 시 전산자료 보유기관 내부(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이용은 전산자료 보유기관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그 외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
  - 비관계자에게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지 않고 있는 주거 층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의 이용 신청의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 내부(국토교통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자체)의 이용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판단하며, 그 외에는 이용 승인 불가

이용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동이용 대상기관**	기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국회***	
전산자료 유형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안내 (p.10)		불가		
전산자료 유형별 신청 및 승인절차	대량/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연계		공공데이터 이용 안내 (p.10) 이용절차도C (p.18)		국회증언 감정법 제2조에 따른 제출 (p.14)  이용 절차도D (p.18)	
	세무DB	개인정보 없음 (공공데이터 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포함	이용승인 신청 검토 (p.22)	이용승인 신청 검토 (p.22)  이용절차도B (p.17)  ※위원회 심의 불필요		이용승인 신청 검토 (p.22)  이용절차도B (p.17)  ※위원회 심의 필요
	맞춤형 통계 생산 및 가공		이용절차도A (p.16)  ※위원회 심의 불필요	공공데이터 이용 안내 (p.10) 이용절차도C (p.18)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이용승인 신청 검토 (p.22)  이용절차도B (p.17)  ※위원회 심의 필요		
		각 층 평면도	다중이용 건축물 (주거 층 제외)			
기타			이용승인 신청 검토 (p.22)	불가		
단위세대 평면도		이용절차도A (p.16)  ※위원회 심의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은행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

\*\*\*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의 경우

### [그림 3-1] 민감도 등급을 반영한 전산자료 유형별 제공 판단

출처 : 연구진 작성

##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 1) 전산자료 이용 환경 변화 반영

####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 확대

-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전산자료 이용 신청 대응 등 「건축법」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신청 대상 확대 반영 필요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등에 대한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이용 신청이 제한되지 않음
  -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등에서 건축 산업계의 가명정보 이용을 과제로 제시하는 등 전산자료의 민간 이용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3-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 개정(안)

현행	개정
1) 행정기관 「전자정부법」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 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 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의 단서에 따 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 없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	3)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헌법상 독립기관
3) 「은행법」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기관 (이하 “은행”이라 한다.)	5) 공동이용 대상기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 동이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 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행정기관등”)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4)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5)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있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다만, 해당 행정권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6)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제3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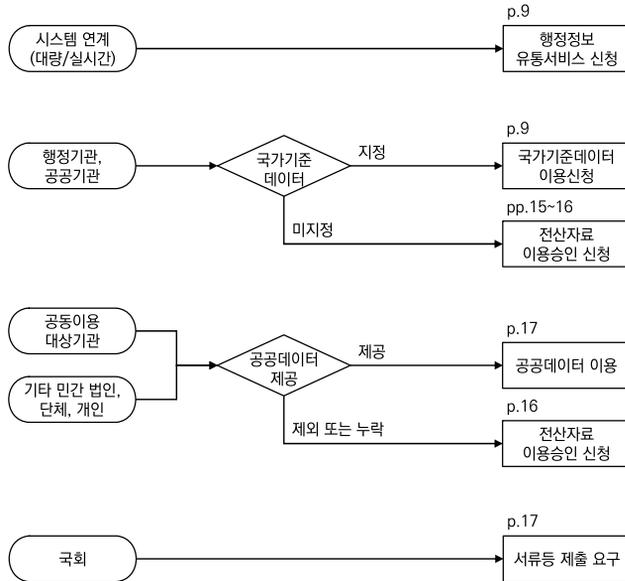
-	7) 국회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 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

출처: 연구진 작성

####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별 이용절차 정리

- 다양한 주체별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정리 필요
  - 현행 매뉴얼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의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전산자료 이용을 상정하고 있어, 민간의 가명정보 등 다양한 전산자료 이용 유형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프로세스를 정리한 순서도 제시
  -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동이용 대상기관(민간), 기타 국민 및 민간 등 다양한 주체의 전산자료 이용 신청에 대응하는 매뉴얼 개선안을 제안
  - 「건축법」에 따른 이용에 한정하지 않고, 각 주체가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근거 법령 및 이용 절차를 종합적으로 안내



[그림 3-2] 전산자료 이용 유형별 이용절차 판단 순서도

출처 : 연구진 작성

#### □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에 대한 이용승인 검토 강화

-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이용 목적 외 외부 재배포 금지
  - 건축법 제32조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고 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5항 제2호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을 지시
- 전산자료 재배포에 대한 검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

- 증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정책 근거에 대한 소통도 더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에서 재배포 또는 가공 후 결과 제공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음
- 민간에 전산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등 이용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및 유형에 따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이용승인 사전 심사 및 본 검토 각 단계에서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에 대한 독립적인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뉴얼 개선 필요
  - 이용 신청 내용을 검토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전산자료 보유기관, 이러한 내용을 심의하는 위원회 등은 전산자료 재배포 관련 이용신청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이용방안의 다른 항목과 독립적인 판단 필요
  - 이용 목적 자체에 외부 재배포가 포함된 경우 재배포 자체를 금지하지 아니함
- 매뉴얼 부록 '이용 신청 서류'에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전산자료 이용 신청 절차 전 과정에 걸쳐 제공받은 전산자료 및 가공 후 결과물의 재배포 여부에 대한 판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를 별도 항목으로 추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 신청 시 제출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신청서 및 결과표'에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항목을 추가하고, 전산자료 원본 또는 가공 후 결과물의 재배포 여부 등을 기술하도록 명시
  -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에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를 추가하여, 재배포하지 않고 내부 이용하는 경우, 가공 후 재배포하는 경우, 전산자료 원본을 재배포하는 경우 3가지 중 한 가지 유형에 표시하도록 함
  -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작성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에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항목을 추가



- 전산자료의 자료 형식을 단순 ‘파일’이 아닌 전자파일 형식 명시 필요
  - 현행 매뉴얼에서 제공 방식 항목의 예시로 들고 있는 파일, 문서, 기타 등의 내용을 유지하면서 항목 이름을 그 내용과 합치되는 ‘자료 형식’으로 변경
  - 전자파일 형태의 자료 교환이 대다수인 현황을 반영하여 단순히 ‘파일’이 아니라 전자파일 형식을 명시하도록 안내할 필요
- 전산자료의 제공 방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뿐만 아니라, 이동식 매체 등 다양한 제공 방식을 명시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 전산자료의 전달 방식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등 온라인 전송 뿐만 아니라, 방문 등을 통한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표 3-4]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방식 다양화 대응(안)**

현행	개정
3.1.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심사 신청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제공방식(예, 파일, 문서, 기타 등)	3.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심사 신청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자료형식(전자파일 형식 등), 제공방식(공동이용센터, 이동식 매체 등), 전달방식(전송, 방문 등)

출처: 연구진 작성

## 2) 전자정부법 개정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환경 변화 반영

###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우선 이용

- 국가기준데이터 개요
  - 국가기준데이터는 다수의 행정기관 등이 이용하는 행정정보로서 정확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행정정보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함<sup>43)</sup>
- 국가기준데이터 이용 절차
  -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려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이용 신청을 검토하고 승인, 거부 또는 보완요청 결과 통보

43)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제3항

- 행정안전부 장관의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및 신청기관의 이용

**[표 3-5]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우선 이용(안)**

현행	개정
2.6 전산자료 제공 등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공공기관은 전자정부법에 의거하여 우선적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2.6 전산자료 제공 등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출처: 연구진 작성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통한 시스템 연계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개요
  - 「전자정부법」 제39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가 제공하는 대량/실시간 자료 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서비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이 대량 정보의 주기적 이용 또는 단 건 정보의 실시간 이용하려는 경우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로 시스템을 연계할 수 있음<sup>44)</sup>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절차를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신청하기 전 행정정보 보유 기관과 협의부터 신청기관의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까지 5단계로 구분하여 추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국가기준데이터 우선 이용(안)**

2.5 전산자료 이용 절차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전자정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1)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대량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단 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기관은 신청 전 미리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보유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한해 협의할 수 있다.

2)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동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은 정보유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성 조치 등을 검토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44)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

있다.

3)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유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동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공공데이터법 제정 내용 반영

#### □ 공공데이터 개방 의무가 신설되어 대응 필요

- 건축행정 전산자료 중 업무상 작성하거나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부분은 공공데이터로서 개방할 의무가 있음
  -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2호는 행정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공공데이터로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는 공공데이터를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

#### □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시 공공데이터 우선 이용 명시

- 민간의 경우 공공데이터 우선 이용 대상임을 명시할 필요
  - 공동이용 대상기관 여부와 상관없이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경우 공공데이터를 우선 이용하도록 규정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절차를 정리하여 건축데이터 민간 개방 시스템 이용과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하고 절차 제안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이용절차(안)

### 2.5 전산자료 이용 절차

○ 공공데이터 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이용

#### 1)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이용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폐쇄말소대장, 건물에너지, 건축물유지관리, 도면정보 등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인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하여 맞춤형색, 지도, 시각화, 대용량 원시데이터, API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 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이용

건축분야의 연구 분석 목적 및 통계 기반의 창조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생성 및 가공 등이 필요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통계자료의 독창성, 실용성(활용성), 공익성, 공공성이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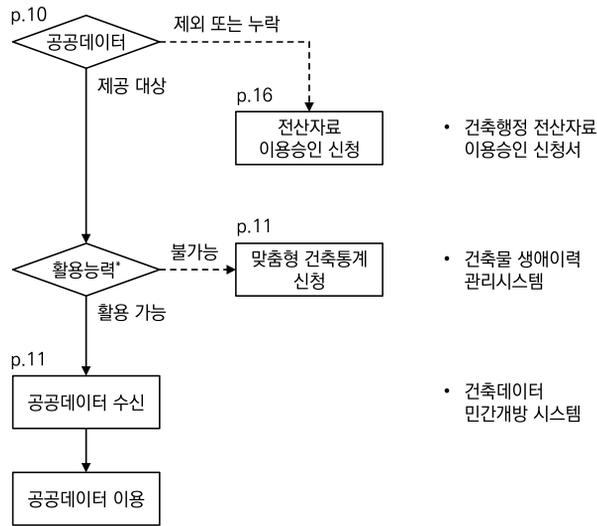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민간의 공공데이터 이용 유형을 구분하면 민간개방 시스템 이용, 공공데이터 이용,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이용으로 구분 가능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전산자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개방하도록 하므로, 전산자료 이용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하여 전산자료 이용 가능
  - 개방되어야 하는 공공데이터가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경우, 「건축법」의 이용 신청 절차를 따라 공공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산자료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처리하여 할 수 있는 능력 필요
  - 전산자료를 통계로 가공하고자 하며 전산자료 이용자가 이를 위한 활용 능력이 없는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신청 가능
- 민간 대상 전산자료 제공 판단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전산자료와 맞춤형 통계 생산 및 가공 등의 전산자료 이용 신청 또는 관련 문의에 대하여 공공데이터 이용을 안내

- 개인정보 또는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전산자료는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건축물현황도(주거 층 제외) 등을 이용하려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이용 신청 및 승인이 필요함
-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추가적으로 생성하거나 변형,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므로,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 신청은 공익성 등을 고려하여 제공 여부 판단

공공데이터 이용자	비고
-----------	----



\* 활용능력: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처리하여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그림 3-4] 공공데이터 이용절차도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p.8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내용 반영

#### □ 가명처리한 전산자료의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가명정보 개념 도입
  -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가정보 없이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가명정보 개념 도입

- 가명정보는 정보주체(「건축법」의 '건축주 등'이 해당)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으며,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인 경우 영리적 이용도 가능함(기업의 연구개발 등)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데이터 3법 개방에 근거하여 가명처리된 이종 데이터 결합을 통한 건축 분야 산업 및 연구를 지원하는 실천과제를 제시함
- 민간의 가명정보 이용 신청 대응
  - 가명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기업 등에 제공할 수 있으므로, 민간의 이용 신청 및 제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는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가명정보 처리 역량이 없어 가명정보 이용 신청에 대해서는 전산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sup>45)</sup>
  - 본 연구에서는 가명정보 이용 신청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에 따라 검토하도록 규정

#### 가명처리한 전산자료의 이용신청 대응(안)

##### 3.3.1 검토 기준 및 절차

가명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검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참조

출처 : 연구진 작성

## 5) 이용 신청 절차 관련 용어 정리

### □ 전산자료 이용자 및 소속 인원에 대한 용어 정리

- 전산자료 이용자를 「건축법」상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및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와 일치시키고, 소속 인원에 대한 용어를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로 정리하는 개선안을 제안
  -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등으로 전산자료 이용주체를 지칭하고 있으며, 「건축법」은 이용주체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

45) 전산자료 이용 검토 업무 관계자 인터뷰 내용

로 이는 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성격의 주체를 지칭할 수 있음

- 매뉴얼은 「건축법」 상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를 기관으로 상정하고, 전산자료 이용자를 그 소속 인원으로서는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기관에서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하는 자"로 정의
- 이에 따라, 「건축법」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에 규정된 '전산자료 이용자'와 매뉴얼에서 말하는 '전산자료 이용자'의 층위가 서로 다른 문제가 발생
- 특히, 「건축법」과 매뉴얼에서 전산자료 이용자와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관계가 서로 반대가 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혼동 가능성 존재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의 전산자료 이용자 및 소속 인원 관련 내용 (일부)

#### 1.3. 용어 정의

##### 5) 전산자료 이용자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받아 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6)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전산자료 이용자가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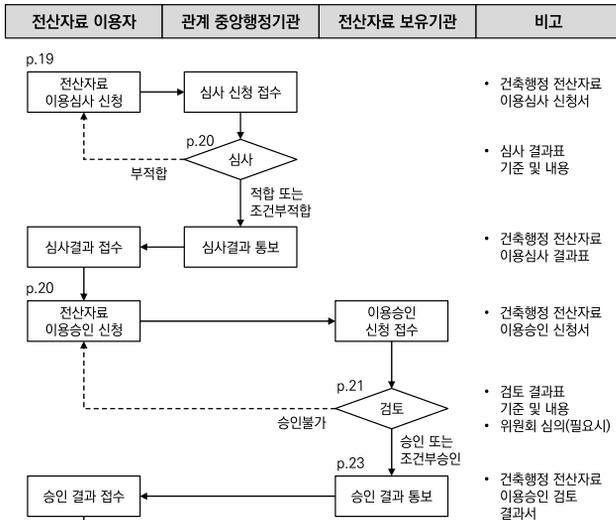
#### 3.5.1.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

- 전산자료 이용자는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 이용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며, 별도로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전산자료 이용 부서의 장과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가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책임이 있다.
  -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총괄관리
  -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제공·이용·파기 등
  - 이용자의 이용관리·기록관리 등
  - 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점검과 그 결과로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의 모니터링
  -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감독 및 보고 등
  - 그 밖에 이용자의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심사 및 검토 관련 용어 정리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심사’로, 그 결과를 ‘적합’, ‘조건부적합’ 또는 ‘부적합’으로 지칭하고,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이용승인 검토는 ‘검토’로, 그 결과는 ‘승인’, ‘조건부승인’ 또는 ‘승인불가’로 일관되게 지칭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및 결과와 구분하는 개선안을 제안
  - 현행 매뉴얼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와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이용 신청 검토 모두에 ‘심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동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이용승인 검토결과서는 서식 제목과 하단 검토자 서명 부분에서만 ‘검토’를 사용하고, 서식 내부에서는 ‘심사’를 사용하여 검토자가 심사 결과를 통보하는 용어 불일치가 발생
  -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이용승인 검토를 ‘심사’로 표기하면서,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와 구분하기 위하여 매뉴얼 전반과 이용 신청 서식에 걸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를 ‘사전 심사’로 지칭하고 있으나,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승인 검토와 관련하여 ‘심사’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



[그림 3-5] 전산자료 이용절차도(일부 발췌)에 표현된 심사 및 검토 관련 용어 출처 : 연구진 작성

□ 전산자료 파기 관련 용어 통일

- 혼용되고 있는 ‘파기’와 ‘폐기’에 대해 해당 용어를 ‘파기’로 통일하는 개선안 제안
  - 현행 매뉴얼에서는 전산자료 파기와 관련하여 ‘파기’와 ‘폐기’를 혼용하고 있으며, 전산자료 이용 관련 서식에서는 ‘폐기’를 주로 사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분에 대하여 ‘파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행 매뉴얼에서도 해당 조문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파기를 규정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의 전산자료 파기 관련 내용 (일부)

2.5 전산자료 이용 절차

○ 전산자료 이용: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5) 전산자료의 이용 및 파기

전산자료 이용자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파기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 및 파기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3.5.4. 전산자료의 파기 및 기록관리

○ 전산자료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3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등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이용자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해당 전산자료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전산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 또한, 이용기간 내에도 이용 및 활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전산자료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이용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 관련 용어 통일

-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 서식을 ‘건축행정 전산자료제공 확인서’로 수록하여 ‘수령’과 ‘제공’을 혼용하던 것을 서식에 맞추어 통일

## 6) 기타 개선 내용

### □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제외 대상 명시

- 심사 면제 대상 기관의 정의 명시 필요
  - 현행 매뉴얼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면제되는 대상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로 규정
  -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기관 중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전자정부법」의 정의에 따라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여, 일부 기관이 이중으로 정의
  -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심사 면제 대상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정의에는 부·처·청 및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만 포함되어, 국회 등 행정사무처리 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 중앙행정기관에 속하지 않고, 따라서 심사 제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매뉴얼에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를 명시하여, 심사 제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제외 대상 관련 내용 (일부)

##### 2.4.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 없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 3)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헌법상 독립기관

##### 3.1.3.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법

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분된 종류의 법인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정부 조직 개편 반영

- 국토교통부 개편 내용 반영 필요
  - 현행 매뉴얼은 2012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3년 3월 정부조직법 전부개정과 함께 발족한 국토교통부가 아닌 그 전신인 국토해양부 명의로 작성
  - 현재 정부 조직 구조를 반영하여 매뉴얼 전반에 걸쳐 국토교통부로 수정

#### □ 전산자료 이용 지도 및 감독 법령 내용 반영

- 전산자료 이용 지도·감독 관련 세부 내용 및 절차를 매뉴얼에 반영 필요
  - 지도·감독 대상 전산자료 이용자의 조건 명시
  - 지도·감독 대상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의 내용을 법령과 일치
  - 전산자료 이용 지도·감독 세부 절차 명시

#### □ 국회법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 대응

-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 대응 절차 매뉴얼에 반영 필요
  - 「국회법」 제128조의 절차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신청과 관련이 없으나, 실무에서는 이를 구분하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이용 승인으로 인식하는 경우 존재
  - 「국회증언감정법」 제2조에 따른 제출은 대부분의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이용 신청을 승인하는 「건축법」에 따른 이용과 큰 차이가 있음
  - 「국회법」 제128조의 절차에 따른 요구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해당 내용을 명시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의 국회법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 관련 내용 (일부)

○ 국회법상 제출 요구: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

1) 국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출 요구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의결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서류등 제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함(제2조). 같은 법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로 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절차를 따른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를 이유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례(법제처 10-0202, 2010. 8. 23.; 법제처 14-0411, 2014. 9. 17., 국무조정실).

출처 : 국토해양부. (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 1)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 절차 정비

##### □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 현행 법령에서는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제공 여부를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판단하도록 하나, 실무적으로는 판단이 어려움으로 부작용 야기
  - 전산자료 이용 승인 검토 기준에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이용 범위 및 내용의 적절성 등은 그 판단에 전문성이 필요한 내용이며, 전산자료 보유기관인 국토부, 시·도, 시·군·구 등에서 엄밀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임
  - 이러한 내용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판단하도록 한 결과, 실무에서는 근거 법령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이 가능한 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도 보수적으로 판단하거나, 전산자료 제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무조건 승인불가로 판단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는 상황
-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매뉴얼 개선 필요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근거 기반 행정과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산자료 보유기관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보수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제공 절차를 개선 필요
  - 중앙건축위원회의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로도 위원회 심의를 통한 전산자료 이용 승인 검토가 일부 가능함
  - 「건축법」에서는 건축위원회가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산자료 이용 절차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는 과정을 거쳐 해당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음
  - 매뉴얼 개선안에서는 「건축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와 제5조의5에서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에 두도록 하는 건축위원회(중앙건축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서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을 심의하도록 함

[표 3-6] 민감성 전산자료 제공 심의 개선(안)

현행	개정
<p>3.3.2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p> <p>-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신청을 심사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심사 및 제공방법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3.3.2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p> <p>-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 및 제공방법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저작권 등이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승인의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두는 건축위원회(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음</p> <p>-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축사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허락이 필요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p> <p>※건축물현황도에 표현된 현황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설계도에 설계자의 경험, 사상이 표현되어 그 전체적인 표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됨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0. 6. 2. 판결, 99가합12579 손해배상(지)). 법령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는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p>

출처: 연구진 작성

#### □ 개인정보 포함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 신청에 대한 전산자료 제공 절차 개선 필요
  - 현행 매뉴얼은 「전자정부법」에 근거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틀을 따르고 있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행 등)을 제외한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전산자료 이용을 상정하고 있지 않음
  - 그러나, 「건축법」은 전산자료의 이용 주체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실무적으로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 요청이 계속 수신되고 있는 상황

- 현재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건축행정 전산자료는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공개 및 제공하고 있음
  - 2013년 「공공데이터법」 제정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저작권 등 제외한 공공데이터의 사전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전산자료를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하여 이용 가능
  - 세움터 전산자료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유자정보와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건축물현황도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 원시데이터로 제공하지 않고 있음
  - 익명화를 거친 소유자구분정보(개인, 법인, 종교단체, 국유 등),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에 대한 단 건 조회 등은 제공
-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전산자료의 이용 및 제공 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정비 필요
  -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나, 개인정보에 대한 익명처리 또는 가명처리를 거쳐 제공 가능
  - 향후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의 민간 이용 신청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요청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제도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포함한 전산자료의 민간 제공 절차 보완 필요
  - 현행 전산자료 이용 법·제도는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을 상정하지 않고 있어, 민간 제공을 위한 별도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
  - 「건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의 전산자료 민간 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공동이용 대상기관을 제외한 기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전산자료 제공 절차를 별도로 제시 필요
  -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를 포함한 전산자료 이용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산자료 제공 여부 판단 필요
  - 「건축법」 시행령은 현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와 기타 기관의 경우로만 나누어 전산자료 이용 절차를 규정하나, 향후 민간의 전산자료 이용을 상정하여 별도의 전산자료 이용 절차를 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 건축물현황도 중에서 주거 층 및 단위세대 평면도의 경우, 소유자 및 거주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이용 승인이 불가함
  - 그림에도 불구하고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고 공익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 제3자 저작권 포함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전산자료의 범위
  -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대부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누구나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활용 가능
  - 건축물현황도는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건축 설계도면을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법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이용이 허락
- 건축물현황도 이용 신청에 대한 대응 필요
  - 현재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에서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에 한하여 단건 조회가 가능한 상황
  -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전산자료인 건축물현황도의 이용 및 제공 가능 요건 및 절차를 수립 필요
-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전산자료의 제공 절차 정비 필요
  - 건축물현황도 중 배치도와 다중이용건축물에서 주거 층을 제외한 평면도는 누구나 단건 열람이 가능한 상황으로, 여러 건 제공 및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님
  - 현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갖추어진 배치도와 평면도(주거 층 제외)에 한하여, 국토부가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중앙행정기관이 이용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전산자료를 해당 지자체가 이용하는 경우 등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와 신청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검토가 수월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직접 판단하여 전산자료 제공 및 이용이 가능하도록 함

- 기타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아닌 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배치도 및 평면도(주거 층 제외)를 이용하려는 경우는 그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검토하도록 함
- 단, 주거 층 평면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 심의 필요

## 2) 전산자료 제공 절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보완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전산자료 이용절차 보완

-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전산자료 이용절차 모호성 개선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하 “헌법기관 사무처 등”)은 헌법상 독립기관의 소속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 아님
  -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서는 헌법기관 사무처 등을 행정기관에 포함시켜 정의하고 있으나, 「건축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에만 별도 이용절차를 적용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매뉴얼에서는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가 면제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어, 헌법기관 사무처 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의 경우 건축법과 매뉴얼에서 적용하는 이용절차가 서로 모순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과 달리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어디인지 모호하나, 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용 절차에 모호성 존재
- 1안: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사전 심사 면제
  - 매뉴얼 개선안은 현행 「건축법」에 맞추어 헌법기관 사무처 등과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전 심사를 요구함
  - 그러나 이 경우, 헌법기관 사무처 등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모호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며, 헌법기관 사무처 등에 대하여 사전 심사를 면제하는 방향이 같은 헌법기관인 중앙행정기관과의 입법적 균형 측면에서 더 적합할 수 있음

- 따라서, 다음과 같이 헌법기관 사무처 등에 대한 사전 심사를 면제하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

**[표 3-7]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심사 면제**

매뉴얼	법령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건축법」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②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지 아니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④ …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④ … 제3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2안: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사전 심사를 면제하지 않는 경우, 헌법기관 사무처 등의 전산자료 이용 신청시 사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헌법기관 사무처 등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심사를 받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대안으로 제안

**[표 3-8]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명시**

매뉴얼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① …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를 이용하려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받기 위하여 ... 신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로 한다.**

출처: 「건축법」 시행령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 전산자료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 의무화

- 현행 법령의 검토 결과 통보 규정 미비
  -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는 전산자료 이용의 세부 절차를 규정하나, 이용자의 승인 신청 이후부터 승인 내용 기록·관리 이전까지의 절차에 대한 규정 없음
  - 같은 조 제3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심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달리,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규정 없음
- 전산자료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 규정 마련
  - 본 연구에서는 사전 심사와 동일하게 15일의 기한 안에 전산자료 이용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제안함
  - 단, 위원회 심의 등 사유로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대신 통보할 수 있도록 함

#### [표 3-9] 전산자료 이용 신청 검토 결과 통보 의무화

매뉴얼	법령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 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단, 위원회 심의 등

사유로 기한 안에 검토를 마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대신 통보할 수 있다.

⑤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 ⑥ 법 제32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이란 …

출처: 「건축법」 시행령 바탕으로 연구진 작성

### 3) 건축도면 공개 방안

#### □ 현행 건축도면 공개 시 저작권 문제

- 제3자 저작권이 포함된 전산자료의 이용 가능 범위
  - 저작권법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저작물을 복제 또는 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하는 등의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은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도록 하나, 이에는 「저작권법」에 따른 제3자의 저작권이 포함된 것으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가 포함되지 않음
  -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2항은 제3자 저작권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규정
- 건축도면에 포함된 제3자 저작권의 범위
  -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저작물과 도형저작물 등 기능적 저작물의 경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아닌 사실 그 자체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보호받지 못함
  - 지도에 표현된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일 뿐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며, 이를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등이 창작성과 저작권 보호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판례(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sup>46)</sup>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에 설계자의 경험, 사상이 표현되어 그 전체적인 표

46) 저작권법위반. (2011. 2. 10.).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F%84291>

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직 실현되지 않은 설계안의 경우 설계자의 경험,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전체적인 표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로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0. 6. 2. 판결, 99가합12579 손해배상(지))<sup>47)</sup>

- 건축물현황도에 해당하는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저작물에 해당하며, 인문적 현상 자체에 대한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sup>48)</sup>과 설계자의 독자적인 경험 및 사상의 표현이 모두 포함된 저작물

#### □ ‘건축물 도형정보’의 추출 및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근거 규정 마련 필요

- 건축물현황도에서 제3자 저작권을 분리한 ‘건축물 도형정보’ 공개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 현재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관리하는 건축물현황도에는 제3자 저작권이 인정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복제 및 배포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필요
  - 그러나, 건축물현황도에 표현된 내용 중 건물 등 인문적 현상에 대한 사실 그 자체의 표현만을 분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공공데이터법」에 따라 설계자의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공데이터로 개방하여 제공하여야 함
  - 건축물현황도에서 설계자의 창작성이 있는 부분을 제외하여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형상에 대한 도형정보(이하 건축물 도형정보)를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하여 건축물현황도에서 건축물 도형정보의 추출 및 제공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건축물 도형정보의 분리 근거 규정 신설 필요

#### 건축물 도형정보의 분리 근거 규정 신설(안)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전산자료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술적 분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출처 : 연구진 작성

4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3). 한국 저작권 판례집 (Vol. 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p. 106.

48)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

# 제5장 결론

## 1. 연구요약

## 2. 향후연구

---

### 1. 연구요약

####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수요 증가

-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산업이 발전하고 있으며, 건축 분야 또한 이에 대응하는 신산업 창출 수요 증가
  - 디지털 트윈, 3차원 도시구축, 프롭테크 등 건축분야 신산업 증가세 뚜렷
  - VR/AR 기술 도입, 건축정보 유통 활성화로 수요자 맞춤형 건축산업 확장
- 건축행정 전산자료는 건축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기초정보를 보유한 자료로, 활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공공의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시스템 연계 사례가 400여건에 달하는 등 건축행정 전산자료는 이용 수요가 높음
  - 민간의 머신러닝 기반의 AI 개발, 수요자 맞춤형 건축정보 공급을 위해 건축물의 기본적 정보와 도면정보 등이 포함된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요 증가
- 현행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방식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성을 확대를 위한 제공방식 개선 필요

- 공공의 경우 이용자료, 이용목적 등 세부적인 현황 파악 필요
- 민간의 경우 도면정보를 포함한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비율 낮음
- 「공공데이터법」과 같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확대 관련 법이 제정되고 있으나,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개선 필요

####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제도 개선 방안 모색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이용주체에 따른 제공 기준 체계화
  -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목록을 조사하고 현행 법·제도에 따라 전산자료를 분류
  - 현행 법·제도에 따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주체별 이용 전산자료별 제공 기준을 구분하여 전체적인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기준 체계화
- 현행 법·제도를 반영하고,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안 제안
  - 2012년 이후 개정되지 않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의 현행화 방안 제안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활성화, 관계 법·제도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선방안 제안
- 자료 제공 시 문제 발생 가능성 최소화 및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방안 제안
  - 민감·개인정보 포함, 3차 저작권 포함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제공 절차를 정비하여 관련 자료 제공시 문제 발생 가능성 최소화
  - 전산자료 제공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보완사항 검토 및 개선안 제안

## 2. 향후연구

### □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추가연구 필요

- 본 연구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활용을 위해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정 방안과 관계 법·제도 개선방안을 제안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여 기존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방법을 검토하고, 자료제공 확대 방안을 모색
  - 「개인정보 보호법」, 「건축법」 등 관계법의 제한에 의해 모든 이용주체의 모든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이 가능하지는 못함
- 민감정보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및 건축 도면의 자료 활용을 위한 ‘건축물 도면정보’ 추출 기술 개발 필요
  -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되었으나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사례를 검토하고 건축행정 전산자료에 적용 방안 검토
  -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건축물 도면정보 간략화를 통한 약식도면 제공 방안 등 검토 필요

### 1) 데이터 안심구역 제도 도입 방안 연구

#### □ 데이터 안심구역

- 데이터 안심구역은 미개발 데이터를 분석 및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공공 및 민간기업의 미개발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sup>49)</sup>
  -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16개 기관이 데이터를 제공하며, 안심구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승인을 받은 이용자가 데이터를 활용 가능

49) 데이터 안심구역, <https://dsz.kdata.or.kr/svc/page/intro/safezone.do>, 2022.09.04. 접속

**[표 4-1] 데이터안심구역 및 제공데이터 현황**

기관	제공데이터
통계청	통계청 관리 데이터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 의료빅데이터 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라이프사이클 통합정보, 리콜확인대상 정보 등
한국전력공사	계약종별 전력사용량, 산업분류별 전력사용량, 요금청구방식 변동추이 등
BC카드	카드매출 정보, 카드업종 정보, 연관소비 정보
신한카드	지역별 상권 특성 정보, 지역별 외국인 소비정보
CJ올리브네트웍스	택배송장 정보, 영화 관람 정보, 화장품 구매 정보, 식음료 구매 정보 등
SK텔레콤	성·연령별 유동인구, 시간단위 유동인구, 요일별 유동인구, 서비스 인구 정보
한국기업데이터	신설기업 정보, 외감기업 정보
SK플래닛	주요 상권별 방문 인구 정보, 주요 지역별 상권 방문 인구 정보
삼성카드	내국인 해외업종별 소비정보, 내국인 해외국가별 소비정보
웰컴금융그룹	2금융권 계좌 분포정보, 대부업권 계좌 분포정보 등
코리아크레딧뷰로	지역단위 신용통계정보 인구통근(OD) 정보
KT	시간대별 유동인구정보, 외국인관광객 인구정보, 미세먼지 정보
핑거앤	혈당기록 정보, 식이기록 정보, 운동기록 정보
KORTRA	글로벌기업역량진단(GCL)

출처: 데이터안심구역, <https://dsz.kdata.or.kr/svc/page/intro/safezone.do> 2022.09.04. 접속. 참고하여 연구진 작성

- 안심구역 내 클라우드 기반의 분석용 PC를 제공하는 등 데이터 분석공간을 제공하며, 분석자료를 반출 가능



**[그림 4-1] 안심구역 내 분석공간**

출처 : 데이터안심구역, <https://dsz.kdata.or.kr/svc/page/intro/safezone.do>, 2022.09.04. 접속

- 데이터의 개인정보보호 등 보안유지를 위해 원시자료 자체는 반출이 불가능하며, 분석결과에 한하여 반출 가능

- 분석 프로그램 및 결과값 등 데이터의 반출을 위해 반출 심의 신청 후 승인완료 시 데이터 반출 가능

### 이용자 준수사항

-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이용자 외에는 안심구역 출입을 금지합니다.
- 이용 자료는 안심구역 내 지정 좌석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자료 분석과정에서 알게 된 개별자료 관련 사항에 대한 누설을 금지합니다.
- 이용 신청 시 작성한 범위에 한해 이용을 제한하고, 신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제3자 양도, 대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특정 개인, 법인, 단체 등 식별 가능한 자료의 분석은 행할 수 없습니다.
- 사전에 명시한 목적 외 자료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별도의 승인 없이 중간, 최종 결과물을 무단 반출하거나 공표할 수 없습니다.
- 승인된 분석 결과물을 대외적으로 활용할 경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및 데이터 제공기관·기업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반출 신청 자료 이외의 이용자료 일체는 이용기간 종료 후 삭제됩니다.
- 준수사항 위반 시 관련 규정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자 가이드북, p. 51

### □ 데이터 안심구역 도입 방안 모색 필요

-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sup>50)</sup>의 경우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데이터 안심구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의 신청에서부터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용자의 접근과 활용의 편의를 높이기 위함
  - 표본 연구 DB, 맞춤형 연구 DB, 건강질병지표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 공개 불가능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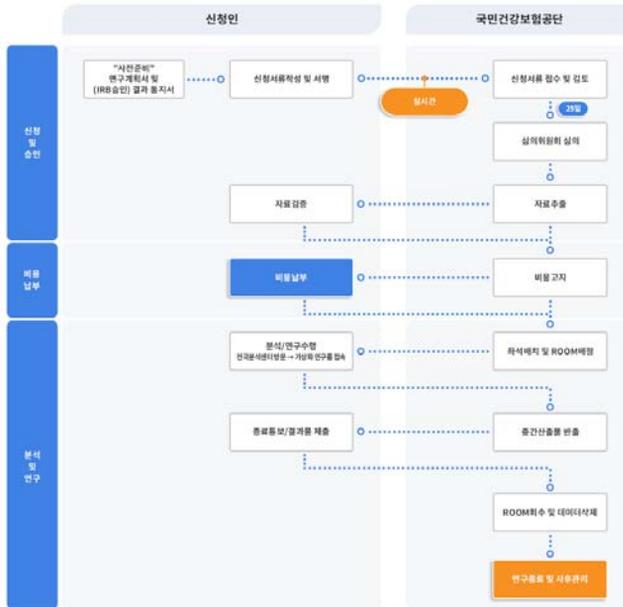
50) NHISS, <https://nhiss.nhis.or.kr/bd/ay/bdaya001iv.do>, 2022.07.13. 접속

[표 4-2]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가 제공하는 데이터

구분	내용
표본코호트DB	사회·경제적 현황(자격 및 보험료, 장애 및 사망), 의료이용 현황(진료 및 건강검진), 요양기관 현황, 노인장기요양 현황
건강검진코호트DB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장애 및 사망 포함), 의료이용(진료 및 건강검진)현황, 요양기관 현황
노인코호트DB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장애 및 사망 포함), 의료이용(진료 및 건강검진)현황, 요양기관 현황,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현황
영유아검진코호트DB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장애 및 사망), 의료이용(진료 및 건강검진)현황, 요양기관 현황
직장여성코호트DB	사회·경제적 자격 변수(장애 및 사업장 포함), 의료이용(진료 및 건강검진)현황, 요양기관 현황

출처: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https://nhiss.nhis.or.kr/bd/ab/bdaba016lv.do>, 2022.07.18. 접속

- 건축행정 전산자료 또한 별도의 플랫폼을 통해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분석 센터인 데이터 안심구역 플랫폼 구축 및 절차 마련 필요
  -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절차를 마련하고 자료 제공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제공 PC 사용 및 클라우드 서버 활용 등 건축행정 전산자료 제공 방법을 마련해야 함



[그림 4-2]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의 맞춤형연구DB 세부신청절차

출처: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https://nhiss.nhis.or.kr/images/img05.png> 2022.10.28. 접속

- 이용하고자하는 데이터와 활용방안, 신청자 유형에 따른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및 활용 기준 마련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등 민감정보 유출 차단을 위한 대체변수사용, 그룹화, 마스킹 등 데이터 비식별화 방안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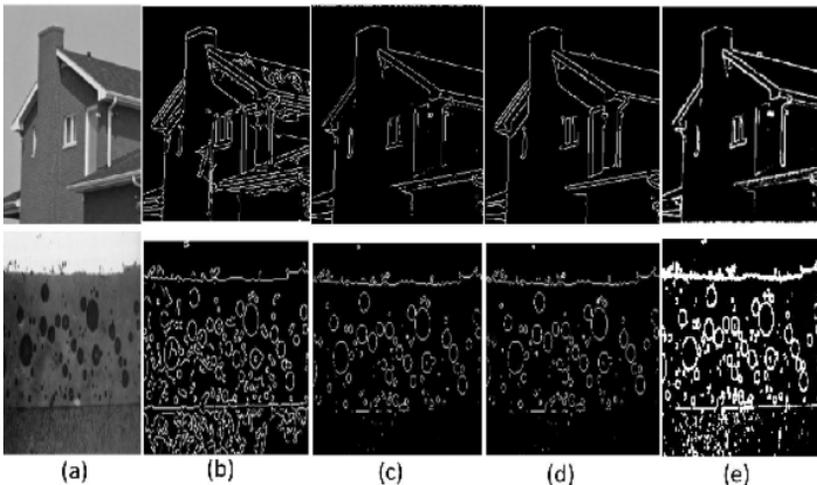
## 2) '건축물 도형정보'의 추출을 위한 기술 개발 연구

### □ 건축물 도면정보의 표준화 필요

- 현행 건축물 도면정보는 표준화된 레이어를 활용하지 않아 필요한 레이어의 일괄 추출 어려움
- 향후 건축물 도형정보 추출 편의성 확보를 위한 건축물 도면정보 레이어 표준 및 건축행정시스템 업로드 표준에 대한 연구 필요

### □ 이미지 파일의 정보추출 기술 개발 필요

- 과거 건축물 도면의 경우 CAD 파일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업로드된 사례가 많아 이미지 파일에서 정보 추출 필요
- 영상처리 분야에서 오랜기간 발전해온 이미지로부터 경계선을 추출하는 엣지 디텍션 기술 적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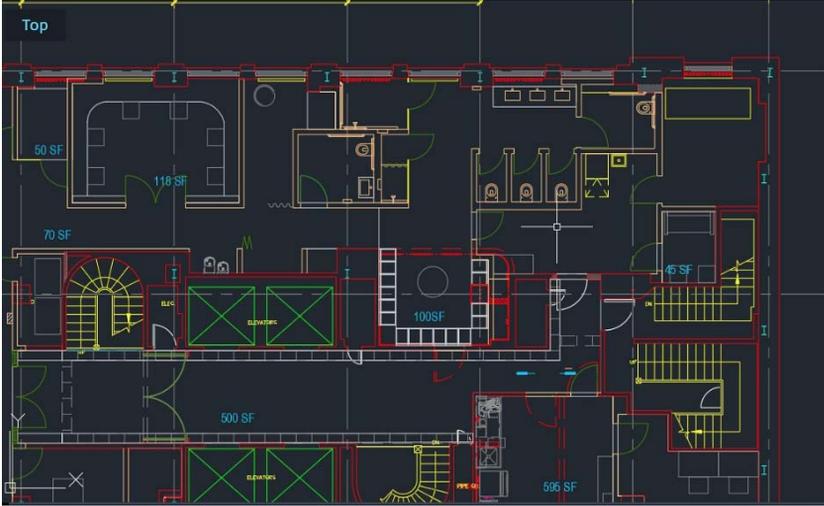


[그림 4-3] 이미지로부터 경계선 추출 연구 예시

출처 : Dhar, 2016, A novel method for edge detection in a gray image based on human psychovisual phenomenon and Bat algorithm, Computer,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Technology, p. 6

□ 건축물 도형정보 추출기술 개발 필요

- 건축물 도면은 다양한 건축공간 관련 선과 함께 치수 등을 표시하는 선이 혼재되어있어 필요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



[그림 4-4] 건축도면 예시

출처 : autodesk, <https://www.autodesk.co.kr/products/autocad/overview?term=1-YEAR&tab=subscription>, 2022.09.28. 접속

- 설계의 창작성을 제외한 건축물 도형정보에 대해 정의하고 건축물 도면으로부터 이를 추출하기 위한 기술 개발 필요

- 
-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16930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107호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102호  
건축법. 법률 제18508호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773호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8871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69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2022). 데이터 안심구역 이용자 가이드북  
국토교통부(2020). 「건축물통계」 통계정보보고서  
국토교통부(2020). 「건축허가 및 착공 통계」 통계정보보고서  
국토해양부(201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건축물 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344호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방송통신위원회(2010). 공공정보의 민간활용을 위해 정부가 나선다 -「공공정보 민간활용 촉  
진 종합계획」 마련-  
서울특별시(2021). 정보공개 업무 매뉴얼  
세움터(2021). 2021년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완료보고서,  
손현진(2013). 경제사회 활성화를 위한 디지털 공공정보 개방에 대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 한  
국법제연구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2003). 한국 저작권 판례집 (Vol. 7).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전자정부법. 법률 제17799호  
최유·차현숙(2016).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프롭테크포럼(2022). 2022 프롭테크 리스트 북  
한국프롭테크포럼, 한국부동산분석학회(2022). 부동산산업을 바꾸는 기술, PROPTECH 현장

## 에서 만나보는 협업 사례

행정안전부(2021).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실무 매뉴얼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2022.09.04. 접속

공실, <https://www.gongsilapp.com/>, 2022.09.05. 접속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F%84291>,  
2022.09.06. 접속

국민건강보험자료 공유서비스, <https://nhiss.nhis.or.kr/>, 2022.07.18. 접속

데이터 안심구역, <https://dsz.kdata.or.kr/svc/page/intro/safezone.do>, 2022.09.04. 접속

랜드북, <https://www.landbook.net/>, 2022.09.05. 접속

리체, <https://www.lomad.co.kr/>, 2022.09.06. 접속

모두의주차장, <https://www.moduparking.com/>, 2022.09.06. 접속

모카시스템, <https://www.airfob.com/>, 2022.09.06. 접속

밸류맵, <https://www.valueupmap.com/>, 2022.09.05. 접속

부동산플래닛, <https://www.bdsplanet.com/main.ytp>, 2022.09.05. 접속

빅밸류, <http://www.bigvalue.co.kr/>, 2022.09.06. 접속

스파크플러스, <https://sparkplus.co/>, 2022.09.06. 접속

스페이스워크, <https://spacewalk.tech/>, 2022.09.05. 접속

아파트멘터리, <https://apartmentary.com/>, 2022.09.06. 접속

알파박스, <https://alphabox.co.kr/>, 2022.09.06. 접속

에스엘플랫폼, <https://www.ssocioliving.com/>, 2022.09.03. 접속

직방, <https://www.zigbang.com/>, 2022.09.04. 접속

직방 기술 블로그, <https://medium.com/zigbang/%EC%A7%81%EB%B0%A9-3d-%EB%8B%A8%EC%A7%80%EB%B3%B4%EA%B8%B0-%EA%B0%9C%EB%B0%9C-%EA%B3%BC%EC%A0%95-%EC%86%8C%EA%B0%9C-3b5ded339bc0>, 2022.09.05. 접속

체크업, <http://www.checkupv.com/>, 2022.09.03. 접속

타디스테크놀로지, <https://www.tardistechnology.com/>, 2022.09.06. 접속

하우스텝, <https://www.houstep.co.kr/>, 2022.09.06. 접속

홈체크, <https://homecheck.kr/event/dongheng/>, 2022.09.03. 접속

Autodesk, <https://www.autodesk.co.kr/products/autocad/overview?term=1-YEAR&tab=subscription>, 2022.09.28. 접속

Dhar Soumyadip(2016) A novel method for edge detection in a gray image based on human psychovisual phenomenon and Bat algorithm, Computer, Communication and Electrical Technology

NHISS, <https://nhiss.nhis.or.kr/bd/ay/bdaya001iv.do>, 2022.07.13. 접속

---

# Measures for Improving Access to the Computerized Data from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SUMMARY

Heo, Hankyul  
Ahn, Euisoon

---

As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develops, the possibility of using building information, and the demand for building information is increasing. In addition, the improvement of the usability of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is being presented as a major task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city, and space. However, access to data has not been activated due to insufficient guidelines.

The current 'Manual for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Use' has not been revised since the manual was announced in 2013.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provide data, and there are lack of standards for data provision.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aws and systems such as the standards for data provision of the data, and the manual for using the computerized data for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This study tried to revise related laws and system for the use of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and proposes a revised manual(Manual for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Use).

We investigated how building-related information is being used, and what are the limitations of using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It was found that the current building-related data are actively used by both the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rivate sectors. However, it was un clear that the specific data us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purpose of the data use. In case of public sector, the ratio of using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was low. Therefore, It was confirmed that to find ways improving access to the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is important.

Analysi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the use of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was performed. We investigated relevant laws such as Building Act and related laws, building administration system operating regulations,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ct On Promotion Of The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rough this, the part that needs to be updated and improved in the manual was derived.

Based on this review, a plan to improve related laws and systems was proposed to improve the usability of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It is divided into three parts: providing standards for computerized data to be used, manual improvement proposals, and laws and system amendment proposals to promote the use of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The list of data to be used was categorized, and data providing standards and procedures were finally derived according to the sensitivity level of the data. Along with this, a amended manual was proposed to facilitate the data use.

In order to activate the use of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computerized data, a data safe zone application plan and the concept of ‘building information figure’ were proposed. The data safe zone is already being used by organizations that handle personal information, such as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uilding data can also be used in this way. The ‘building information figure’ proposed in this study refers to the form of abbreviated drawings of drawings. Such ‘building information figure’ will be available in the case that it is difficult to provide drawings due to problems such as privacy protection and copyrights.

#### Keywords

Computerized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Data, Electronic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formation System, Information Disclosure, Drawings and Specifications

---

# 부록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

Appendix 1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2022. 08.

국토교통부(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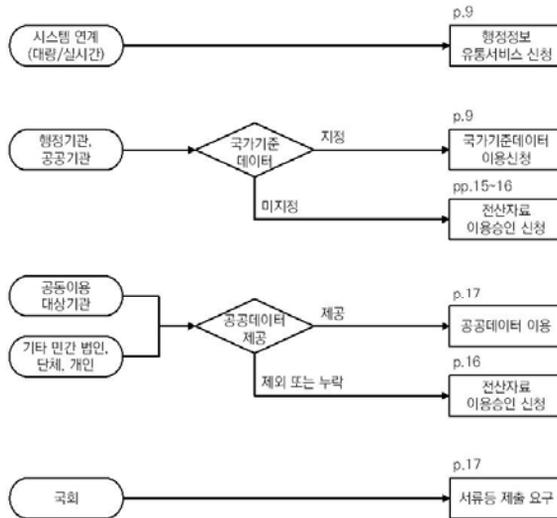
# 목 차

이용매뉴얼 요약 .....	iv
<b>제 1 장 총 칙 .....</b>	<b>1</b>
1.1 배경 및 목적 .....	1
1.2 적용 범위 .....	2
1.3 용어 정의 .....	2
1.4 근거 법령 .....	4
<b>제 2 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b>	<b>7</b>
2.1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념 .....	7
2.2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 .....	7
2.3 이용대상 전산자료 유형 .....	8
2.4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 .....	8
2.5 전산자료 이용 절차 .....	10
2.6 전산자료 제공 등 .....	14
2.7 이용절차도 .....	16
<b>제 3 장 전산자료 이용 신청 및 승인 .....</b>	<b>19</b>
3.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심사 .....	19
3.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심사 신청 .....	19
3.1.2 이용심사 및 결과 통보 .....	20
3.1.3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제외 .....	21
3.2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이용승인 신청 .....	21
3.3 이용승인 신청 검토 .....	22
3.3.1 검토 기준 및 절차 .....	22
3.3.2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 .....	23
3.4 전산자료 이용승인 및 제공 .....	25
3.4.1 승인 결과의 통보 .....	25
3.4.2 전산자료 수령확인서 및 보안각서 제출 .....	25
3.5 전산자료 이용 및 관리 .....	26
3.5.1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 .....	26
3.5.2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의 이용 등 .....	26
3.5.3 전산자료 이용 및 기록관리 .....	27
3.5.4 전산자료의 파기 및 기록관리 .....	27

제 4 장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29
4.1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기록 및 관리 .....	29
4.2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29
※ 서식	
[서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신청서 및 결과표 .....	31
[서식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33
[서식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	34
[서식 4]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 .....	36
[서식 5]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	37
[서식 6]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및 제공 관리대장 .....	38
※ 이용절차 순서도	
[그림] 전산자료 이용 유형별 이용절차 판단 순서도 .....	5
[그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이용절차도 .....	16
[그림] 기타 기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전산자료 이용절차도 ...	17
[그림]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이용절차도 .....	18
[그림] 국회법에 따른 제출 절차도 .....	18

## 이용매뉴얼 요약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근거
  - 모든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주체는 「전자정부법」 제39조 및 제44조의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건축법」 제32조 및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 건축행정 이용절차의 구분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절차는 이용대상 전산자료 유형과 이용주체에 따라 다르며, 전산자료의 유형은 '2.3 이용대상 전산자료 유형(p. 8)'을, 이용주체의 구분은 매뉴얼 '2.4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p. 8)'을 따른다.
- 전산자료 이용절차 요약표
  - 이용자, 전산자료 이용형태 등에 따른 이용절차 판단



[그림] 전산자료 이용 유형별 이용절차 판단 순서도

-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전산자료 제공 판단

이용주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행정기관*, 공공기관, 공동이용 대상기관**	기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국회***		
전산자료 유형							
전산자료 유형별 신청 및 승인절차	대량/실시간 데이터 시스템 연계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안내 (p. 10)		불가	국회중언감정법 제2조에 따른 제출 (p. 14) 이용절차도D (p. 18)		
	세움터 DB	개인정보 없음 (공공데이터 제공)	공공데이터 이용 안내 (p. 10) 이용절차도C (p. 18)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등 포함	이용승인 신청 검토 (p. 22)	이용승인 신청 검토 (p. 22) 이용절차도B (p. 17) ※위원회 심의 불필요		이용승인 신청 검토 (p. 22) 이용절차도B (p. 17) ※위원회 심의 필요	
	맞춤형 통계 생산 및 가공	이용절차도A (p. 16) ※위원회 심의 불필요	공공데이터 이용 안내 (p. 10) 이용절차도C (p. 18)				
	건축물 현황도	배치도	이용승인 신청 검토 (p. 22)	이용승인 신청 검토 (p. 22)			
		각 층 평면도		다중이용건축물 (주거층 제외)		이용절차도B (p. 17) ※위원회 심의 필요	
		기타		불가			
	단위세대 평면도	이용절차도A (p. 16) ※위원회 심의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국회·법인·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 은행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개이용이 가능한 기관

\*\*\*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의 경우

## 제 1 장 총 칙

### 1.1 배경 및 목적

- 건축행정 전산자료는 「건축법」 제32조에 근거하여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이다.
- 데이터 경제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개인정보 보호와 가명처리 등을 통한 안전한 활용 모두 강조되는 실정이다.
  -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은 건축 분야의 빅데이터 구축과 기술 적용 가속화를 위하여, 건축도면정보 등 건축정보의 개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데이터 3법 개방에 근거하여 가명처리된 이중 데이터 결합을 통한 통계분석 및 연구정보 제공 등 건축 분야 산업 및 연구를 지원하는 실천과제를 제시함
-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 및 보호를 위하여, 2012년 매뉴얼 제정 이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시작 등 법제 및 환경 변화를 반영한 현행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 건축행정 전산자료(이하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대상 전산자료 유형과 이용주체에 따라 이용 근거 법령과 절차가 다르다.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이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대량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단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 국민 및 민간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 국회는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절차는 위에서 나열한 경우를 제외한 전산자료 이용에 적용된다.
- 본 매뉴얼은 현행 법령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업무 수행절차와 기준 등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운영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1.2 적용 범위

- 본 매뉴얼은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한 신청, 심사, 승인, 기록관리, 지도감독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 1.3 용어 정의

- 1) 건축행정 전산자료(“전산자료”)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구축·설치·운영하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처리하여 체계적으로 수록한 자료의 집합을 말한다.
- 2) 공공데이터 제공 제외 정보
 

개인정보, 제3자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 3) 전산자료 보유기관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전산자료 이용 신청 대상인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 4) 전산자료 이용 신청자
 

전산자료를 이용하기 위하여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전산자료 이용을 신청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 5) 전산자료 이용자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정상적으로 제공 받아 이용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전산자료 이용자가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7)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한 신청, 검토 및 심사, 이용, 관리 및 파기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을 체계화한 매뉴얼이다.

## 1.4 근거 법령

- 건축법
  - 제32조(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33조(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
- 건축법 시행령
  -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감독의 대상 등)
- 건축행정시스템 운영규정
  - 제15조 (전산자료의 공개)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 제3조(기본원칙)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 국토교통부 데이터 관리 규정
  - 제5조(데이터 운영위원회)
  - 제12조(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 전자정부법
  - 제2조(정의)
  -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 제37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 제39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신청·승인)
  - 제40조(심사·승인·협회의 의제)

- 제41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승인의 철회 및 정지)
  -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 제44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비용 청구)
  - 제44조의2(국가기준데이터의 지정 등)
  - 제44조의3(국가기준데이터의 관리 등)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제28조의2(가명정보의 처리 등)
    - 제28조의3(가명정보의 결합 제한)
    -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 제28조의5(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 제28조의7(적용범위)
  -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 제9조(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 제73조(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제3조(정보공개 원칙)
    - 제8조의2(공개대상 정보의 원문공개)
    -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국회법
    - 제128조(보고·서류 등의 제출 요구)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 제 2 장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 2.1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 개념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건축행정 전산자료의 이용을 위한 신청, 검토 및 심사, 이용, 관리 및 파기 등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 절차와 검토사항 등을 안내하는 매뉴얼이다.
  - 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절차 및 방법
  - 전산자료 이용 신청 및 검토, 승인 심사 등
  - 전산자료 제공 및 안전관리대책, 개인정보 보호 등
  - 전산자료 관리, 파기 등
- 매뉴얼은 위의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한다.
- 전산자료의 목적에 부합한 이용과 안전한 이용 및 보호를 위하여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관리하여야 한다.

### 2.2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각 기관의 역할

- 국토교통부는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세부 내용을 수립하여 제시하며, 전산자료의 보관 및 이용 등 전반적인 이용관리 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하여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용대상 전산자료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본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이용을 신청하며, 승인 후 제공받은 자료는 안전하게 이용하고,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전산자료의 관리 및 파기 등 모든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및 본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 2.3 이용대상 전산자료 유형

-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이용하는 전자정보처리 시스템, 즉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로 처리하여 관리되는 건축인허가사항, 건축물대장, 건축물 소유 현황 정보 등에 대하여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2.4 전산자료 이용신청 대상

- 1)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4항의 단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심사결과 없이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
- 2)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
- 3)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행정기관으로, 헌법상 독립 기관
- 4) 공공기관: 「전자정부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

5) 공동이용 대상기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관으로,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행정기관등”)을 제외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은행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다목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기관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민원처리기준표에 올라 있는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동이용 대상기관으로 지정한 기관

6)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
  -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건축법」에 규정된 이용절차에 따라 이용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제3자

7) 국회

-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 2.5 전산자료 이용 절차

- 국가기준데이터 이용: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3,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 1)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

국토교통부가 관리기관인 국가기준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른 정의)의 장은 국가기준데이터 관리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국가기준데이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 2) 이용신청 승인 및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신청을 검토하여 승인, 거부 또는 보완요청을 하고, 이용신청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승인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승인 결과를 통보한다.
  - 3)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용신청 승인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신청기관의 장에게 해당 국가기준데이터를 제공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기준데이터 제공 항목, 방식, 시기 등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용신청 사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가 이용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가 이용신청 사항과 다른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전자정부법」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5조까지,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제15조의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절차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 1) 행정정보 보유기관과 협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소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다른 기관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대량 정보를 주기적으로 이용하거나 단 건 정보를 실시간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기관은 신청 전 미리 행정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보유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18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한해 협의할 수 있다.

2)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동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은 정보유통의 법적근거,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성 조치 등을 검토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할 수 있다.

3)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신청

이용기관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행정정보유통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정보보유기관이 동의한 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 장관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이 동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5) 행정정보 유통서비스 이용 및 개인정보 보호

행정정보 유통서비스를 제공받은 이용기관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법령과 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공공데이터 이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를」 제26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이용

1)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 이용

건축인허가, 주택인허가, 건축물대장, 폐쇄말소대장, 건물에너지, 건축물유지관리, 도면정보 등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인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건축데이터 민간개방 시스템을 통하여 맞춤형, 지도, 시각화, 대용량 원시데이터, API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이용

2)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의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 이용

건축분야의 연구 분석 목적 및 통계 기반의 창조활동을 위하여 추가적인 생성 및 가공 등이 필요한 통계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맞춤형 건축통계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

- ※ 통계자료의 독창성, 실용성(활용성), 공익성, 공공성이 높은 순서로 우선 선정
- ※ 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3항)

○ 전산자료 이용: 「건축법」 제32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심사 신청

공공데이터 제공 제외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공공기관, 공동이용 대상기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

- ※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른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한 가명정보 이용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이용 가능

2) 이용심사 결과 통보

이용심사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내용을 심

사한 후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3)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이용승인 신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이용심사 결과 적합 평가를 받은 후, 그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문서(신청서)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4) 이용승인 및 제공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용도를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5) 전산자료의 이용 및 파기  
전산자료 이용자는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산자료 이용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이용 기간이 만료되면 전산자료를 반드시 파기하여야 한다. 전산자료의 이용 및 파기에 대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한다.

○ 국회법상 제출 요구: 「국회법」 제128조에 따른 서류등 제출 요구

- 1) 국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출 요구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직접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의결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 청문회,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된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그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할 수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폐회 중에 의원으로부터 서류등의 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여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

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2) 서류등 제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를 받은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함(제2조). 같은 법에서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는 증인이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또는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로 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경우,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절차를 따른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 업무의 의무)를 이유로는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례(법제처 10-0202, 2010. 8. 23.; 법제처 14-0411, 2014. 9. 17., 국무조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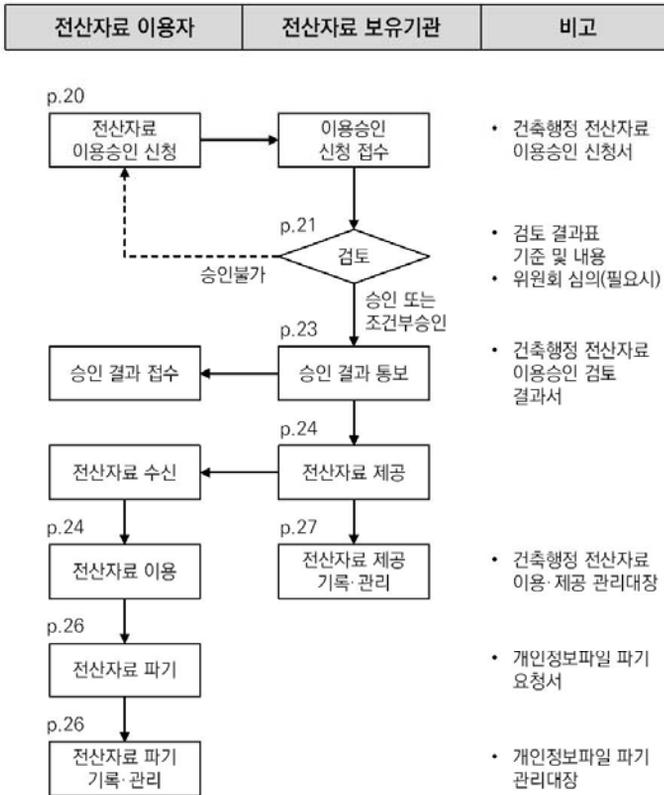
## 2.6 전산자료 제공 등

-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이용하려는 전산자료가 국가기준데이터로 지정된 경우 「전자정부법」 제44조의3 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데이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공동이용 대상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자별로 제공방식 및 범위 등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건축법」, 「개인정보 보호법」,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이용신청 내용·항목 전부를 제공하지 않거나, 일부만 제한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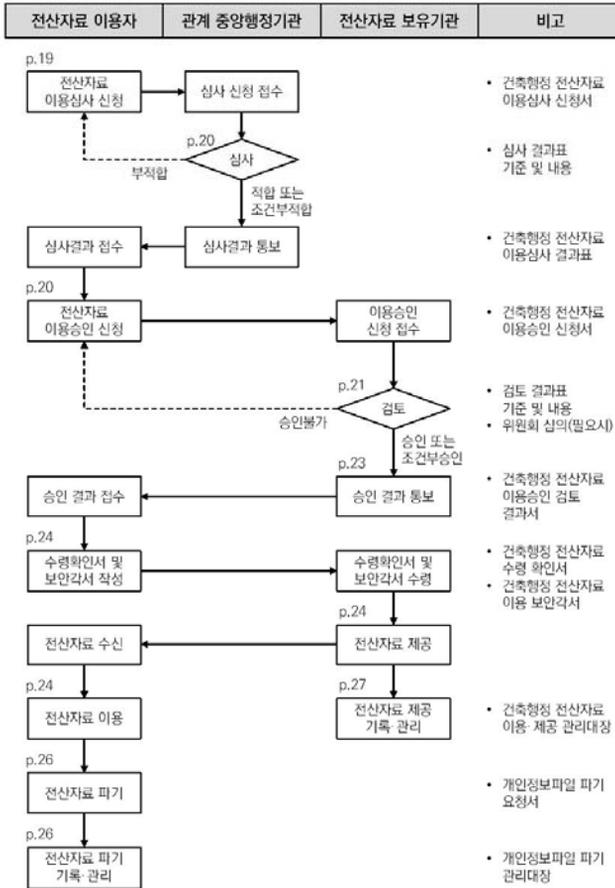
## 2.7 이용절차도

○ 이용절차도A.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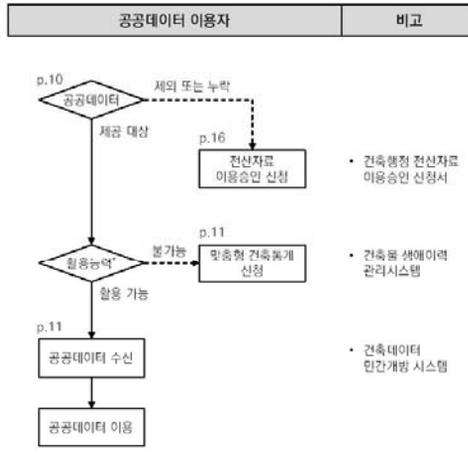
[그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전산자료 이용절차도

- 이용절차도B.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공공기관, 공동이용 대상기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의 경우



[그림] 기타 기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전산자료 이용절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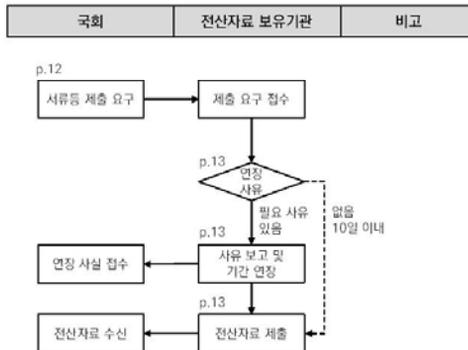
○ 이용절차도C.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 이용의 경우



\* 활용승인: 이용자가 공공데이터를 처리하여 이용 목적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림]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이용절차도

○ 이용절차도D. 국회 본회의, 위원회, 소위원회, 의장 또는 위원장의 제출 요구의 경우



[그림] 국회법에 따른 제출 절차도

## 제 3 장 전산자료 이용 신청 및 승인

### 3.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심사

-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공공기관, 공동이용 대상기관, 민간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 3.1.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용심사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서식 1] 참조)’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청인 사항 : 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소
  - 관계 중앙행정기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 신청인/기관의 성격 : 설립 근거, 성격, 주요업무 등
  - 전산자료 이용 목적 및 방법 : 이용 목적, 활용 방법 등
  -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 근거 : 이용을 위한 근거 법령 조항 등
  -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 이용하려는 자료, 항목, 내용 등
  -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 재배포하지 않음(내부 이용), 가공 후 재배포, 원본 재배포 중 해당 유형
  -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자료형식(전자파일 형식 등), 제공방식(공동이용센터, 이동식 매체 등), 전달방식(전송, 방문 등)
  -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목적 외 사용 및 유출 등 예방 대책, 보관방법, 기록·관리 등
  - 전산자료 이용기간 : 총 기간, 이용종료일(파기일) 등
  - 전산자료 파기사항 : 파기일, 파기 담당자, 파기방법 등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사항 : 관리책임자 사항 및 연락처
  - 업무 담당자 사항 :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 사항 및 연락처
-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에 맞게 최소한

의 범위 및 내용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각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3.1.2 이용심사 및 결과 통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의 내용을 아래의 항목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결과표'([서식 1] 참조)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신청내용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 공익성
    - 타당성 : 이용의 필요성, 이용의 효과, 미제공시 문제점 등에 대한 심사의견
    - 적합성 : 요구항목 및 목적의 적합성, 해당 업무와 신청 자료의 부합성, 법적 근거의 사실성 등에 대한 심사의견
    - 공익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와의 여부, 전산자료 활용의 수혜내용 및 범위 등에 대한 심사의견
  - 개인정보 보호기준에의 적합 여부
    - 「건축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준에의 적합성, 보호대책 등에 대한 심사의견
  -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 및 관리대책의 수립여부
    - 전산자료의 안전관리 대책내용 및 여부, 수립내용의 적정성(보안, 관리자지정, 등급관리 등)등에 대한 심사의견
  - 심사결과 종합의견
    - 평가 : 적합, 부적합, 조건부적합 등으로 평가
    - 결과의견 : 심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및 조건 등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결과표'는 신청인이 제출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의 내용이 반드시 동일하게 포함되어야 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결과표’를 통보할 때에는 수정 또는 변경이 불가능한 형식의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만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결과표’에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신청서’의 내용이 없거나,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과 다를 경우, 이용심사 결과를 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 3.1.3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사 제외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의2에 근거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아래와 같다.
  -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처·청과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분된 종류의 법인

### 3.2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이용승인 신청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용심사 결과 적합 평가를 받은 자는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서식 2〕 참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 결과표’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전산자료 보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 : 국토교통부 장관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도지사
  -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전산자료: 시장·군수·구청장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의2 제4항에 근거하여 전산자료 이용의 근거·목적 및 안전관리대책 등을 적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만으로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 전산자료를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공동이용할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60호)에서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 3.3 이용승인 신청 검토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다음의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서식 3] 참조)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3.1 검토 기준 및 절차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준으로 심사를 하여야 한다.
  - 신청절차 준수 및 신청서 작성 사항
    - 정상적인 신청절차 준수 및 신청서 내용 작성 여부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이용심사 결과표 첨부 여부
  - 이용 대상 전산자료 및 신청인의 적정성
    - 이용 범위의 적절성 및 신청인의 적합 여부
  - 사전심사 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 유무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및 내용의 적합성
  - 이용방안
    - 건축행정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의 지장 유무
    - 개인정보 및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포함 여부
    -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근거

- 전산자료 이용범위 및 내용
-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 ※ 가명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한 검토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및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참조
- 관리대책
  - 전산자료 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 목적 외 이용금지 및 제3자 공개금지 대책 여부
  - 이용기간 및 파기에 관한 사항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여부
- 위반 사항
  - 기존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위반 여부
  - 기존 이용 후 파기 보고 여부
- 검토결과 및 의견 등
  - 검토결과 : 이용승인, 조건부승인, 승인불가 등으로 구분
  - 결과의견 등 : 종합적인 결과의견 및 자료 제공방식 등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신청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확인하고 개인정보처리자, 신청기관의 장 및 관련 임직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3.3.2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

- 신청인이 이용을 신청한 전산자료는 아래와 같이 「건축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의 사항에 따라 특정 개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
  -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다만, 개인의 동의가 있거나 아래와 같이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분실·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가명처리”)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추가정보”)를 포함하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을 검토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검토 및 제공방법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제3자 저작권 등이 포함된 전산자료 이용승인의 경우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두는 건축위원회(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축위원회,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음
  -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건축사의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고 이용허락이 필요한 건축물현황도(배치도, 평면도) 등

※ 건축물현황도에 표현된 현황 사실 그 자체는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설계도에 설계자의 경험, 사상이 표현되어 그 전체적인 표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인 경우 저작권법 상 보호의 대상이 됨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00. 6. 2 판결, 99가합12579 손해배상(지)). 법령에 따라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거나 열람하는 경우는 이용허락이 필요한 경우가 아님.

### 3.4 전산자료 이용승인 및 제공

#### 3.4.1 승인 결과의 통보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 이용 신청자가 신청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신청 건에 대한 승인 결과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서식 3] 참조)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신청인에게 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전산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 전산자료 이용을 위한 필요 사항
  - 정보 유출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
  -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방법·보관, 파기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전산자료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산자료의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 3.4.2 전산자료 수령확인서 및 보안각서 제출

- 전산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받은 자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서식 4] 참조)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서식 5] 참조)를 작성·서명하여 전산자료 보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확인서'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를 제출받은 후 전산자료를 제공하여

야 한다.

-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하여 전산자료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확인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 3.5 전산자료 이용 및 관리

- 전산자료 보유기관에서 전산자료 이용승인을 받은 전산자료 이용자는 전산자료를 신청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3.5.1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지정 및 운영

- 전산자료 이용자는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전산자료 이용 부서의 장으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며, 별도로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 전산자료 이용 부서의 장과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가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를 관리책임자로 지정할 수 있다.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책임이 있다.
  -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총괄관리
  -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제공·이용·파기 등
  - 이용자의 이용관리·기록관리 등
  - 이용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점검과 그 결과로 나타난 특이사항 및 그 대응처리 결과의 모니터링
  -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감독 및 보고 등
  - 그 밖에 이용자의 전산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총괄

### 3.5.2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의 이용 등

-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는 전산자료를 안전하게 이용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 및 활동 등
  -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유출방지
  - 이용목적 외 이용금지 및 제3자에게 제공금지
  - 자료 이용 목적이 완료될 경우 제공받은 전산자료의 파기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산자료 이용 부서의 장과 전산자료 이용 실무자가 전산자료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

### 3.5.3 전산자료 이용 및 기록관리

- 전산자료 이용자는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이 전산자료 이용자에게 전산자료 이용, 관리에 대한 기록 및 내용을 요구하는 때에는 전산자료 이용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3.5.4 전산자료의 파기 및 기록관리

- 전산자료 이용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3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등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이용자는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에 기재한 해당 전산자료의 이용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전산자료를 파기하여야 한다.

- 또한, 이용기간 내에도 이용 및 활용이 종료되었을 경우 전산자료를 즉시 파기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이용자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전산자료를 국토교통부 개인정보보호 세부지침 제73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파기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만일,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및 '건축행정 전산자료 수령 확인서'에 기재한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적으로 이용해야 할 경우, 그 사항을 전산자료 보유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제 4 장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 4.1 전산자료 제공에 대한 기록 및 관리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을 승인하였을 경우 승인내용 및 제공내용을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제공 관리대장([서식 6] 참조)'에 기록하여야 하며 이 대장에는 아래의 항목이 관리되어야 한다.
  - 신청인(기관) 사항
    - 자료 요청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해당 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 요청내용 및 목적
    - 전산자료 요청자료 및 내용, 이용목적
  - 전산자료 관리방법
    - 전산자료 관리책임자, 관리방법, 자료폐기일
  - 전산자료 제공내용
    - 전산자료 제공일, 제공방식

### 4.2 전산자료 이용에 대한 지도 및 감독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개인정보의 보호 및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별 지도·감독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연간 50만 건 이상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시·도지사: 연간 10만 건 이상 시·도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시장·군수·구청장: 연간 5만 건 이상 시·군·구 단위의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의 보유 또는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지도·감독 대상에 대하여 아래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 지도·감독 대상으로 전산자료 보유기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 전산자료 보유기관은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현지조사 결과를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서식 1]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신청서 및 결과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심사신청서 및 결과표(안)				
신청 기관	기관명		부서	
	담당자		연락처	
	주소			
관계 중앙행정기관				
심 사 신 청 사 항	신청기관의 성격	* 설립근거 및 성격, 주요업무 등을 기술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방법	* 자료이용및활용목적, 이용및활용 방법 등을 기술		
	전산자료 이용의 법적근거	* 법적 근거 등을 기술		
	전산자료의 범위 및 내용	*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신청내용 및 항목, 이용대상 자 등을 기술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	* 전산자료 원본 또는 가공 후 결과물의 재배포 여부 등 기술		
	전산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 전산자료의 요청하는 형태를 기술		
	전산자료의 보관방법 및 안전관리대책 등	* 전산자료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대책 방안 및 보관방법, 전산자료관리책임자, 자료이용자 등을 기술		
	전산자료 이용기간	*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기술		
	전산자료 폐기 사항	* 폐기일, 폐기자, 폐기 보고 등을 기술		
건축행정 전산자료관리책임자 사항	* 관리자 부서, 성명, 연락처 등을 기술			
전산자료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사항	* 이용자 및 업무담당자 부서, 성명, 연락처 등을 기술			



[서식 2]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

■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개정 20xx. xx. xx.>

**건축행정전산자료 이용승인신청서(안)**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또는 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이용목적(※ 별지첨부 가능)		
이용기관		
법적근거	자료를 제공받는 방식	
신청내용·항목(※ 별지첨부 가능)		

자료요구 범위 [ ] 국가 [ ]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 ] 시·군·구

자료 재배포 여부 [ ] 재배포하지 않음 (내부 이용) [ ] 가공 후 재배포 [ ] 원본 재배포

안전관리 대책(※ 별지첨부 가능)

「건축법」 제3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건축행정전산 자료 이용승인을 신청합니다.

신청인(기관) \_\_\_\_\_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국도교통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안내	
첨부서류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결과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120g/㎡) 또는 중질지(80g/㎡)]

[서식 3]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검토결과서(안)					
신청 기관	기관명				
	주소				
관계중앙행정기관					
법적 근거					
요구자료 내용 및 범위					
자료이용·활용목적 및 방법					
검토 결과					
검토 기준 및 내용		적합	부적합	조건부 적합	해당 없음
대상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대상 적정성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대상기관 적정성				
사전 심사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심사 유무				
	관계중앙행정기관 장의 심사결과 적합성				
신청 절차	정상적인 공문처리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서				
	첨부서류(관계중앙행정기관의 이용심사결과표)				
이용 방안	건축허가 업무 등의 효율적인 처리의 지장 유무				
	건축주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 위반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목적 및 근거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범위 및 내용				
	건축행정 전산자료 재배포 여부의 적정성				
관리 대책	전산자료 관리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				
	목적 외 이용금지 및 제3자 공개금지 대책 여부				
	이용기간 및 폐기에 대한 사항				
	전산자료관리책임자 및 담당자 지정 여부				
위반 사항	기존 이용자료에 대한 위반 여부				
	기존 이용자의 폐기에 대한 보고 여부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신청 검토 결과		<input type="checkbox"/> 이용승인 <input type="checkbox"/> 조건부승인 <input type="checkbox"/> 승인불가			
검토 결과 의견					
자료 제공방식 등					
<p>건축법 제3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승인 신청에 대해 검토 결과를 통보함</p> <p>년 월 일</p> <p>검토자 부서 :                      성명 :</p>					
서 명	검토자		확인자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 보안각서

본인은 귀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건축행정 전산자료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이용목적 외 이용을 금지하며,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않겠습니다.
2. 제공받은 전산자료로 취득한 사항에 대해 비밀을 엄수하겠으며,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3.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지킬 것입니다.
4. 전산자료 이용기간을 준수하며, 이용기간이 종료되거나 기간 내 이용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 반드시 폐기하겠습니다.

· 건축행정 전산자료 이용기간 : \_\_\_\_\_ ~ \_\_\_\_\_

· 전산자료관리책임자 : 소속 \_\_\_\_\_ 성명 \_\_\_\_\_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 및 보안상의 책임과 관련법규에 의한 조치에 따를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서약자 기관 :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인

